

농림부 연구과제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책임연구원 : 조홍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태성(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기철(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2001. 5.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농림부 행정자료실



0007143

농림부 연구과제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책임연구원 : 조흥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태성(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기철(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2001. 5.

2001-17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7143
등록일: 2001년 10월 24일
기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 연구보고서는 농림부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목 차 례>

제 I 장 농촌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개요	1
1. 연구의 목적	1
2. 이론적 검토	2
3. 연구의 방법	4
제 II 장 생활환경일반	7
1. 생활용수 및 연료	7
2. 주택현황 및 주택개량사업	11
3. 쓰레기 및 하수 처리	16
4. 도로 및 교통여건	20
5. 생활환경일반에서의 정책 과제	21
제 III 장 보건·의료	24
1. 의료기관 이용	24
2. 의료서비스 이용	28
3. 보건소 관련 사항	32
4. 의약분업	35
5. 의료비 관련 실태와 욕구	36
6. 농촌지역 보건의료문제에 관한 정책 과제	39

제Ⅳ장 교육	41
1. 교육비	41
2. 농촌 교육여건	44
3. 농촌교육 개선과제	50
제Ⅴ장 소득 및 경제활동	51
1. 소득관련	52
2. 지출관련	55
3. 부채관련	56
4.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	59
제Ⅵ장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62
1. 노후대책과 연금제도	62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0
3. 사회복지서비스	78
제Ⅶ장 정보화·문화 및 기타	87
1. 정보화 실태 및 욕구	87
2. 문화생활 관련 실태 및 욕구	96
3. 기타 생활 일반	101
제Ⅷ장 조사결과의 요약과 종합 제언	106
1. 조사결과의 요약	106
2. 분야별 정책제언	109

3. 종합적인 정책제언 116

<참고문헌> 120

부록 1: 농업인 조사표 123

부록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사표 144

〈표차례〉

<표 1-1> 조사대상 농가의 지역별 분포	5
<표 2-1> 식수원 현황	7
<표 2-2> 식수의 수량과 수질에 대한 의견	8
<표 2-3> 상수도에 소요되는 월 평균 비용	8
<표 2-4> 식수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	9
<표 2-5> 난방연료와 취사연료	10
<표 2-6> 월 평균 연료비	10
<표 2-7> 농가의 난방 및 취사 연료 사용과 관련된 문제	11
<표 2-8> 농가 주택소유 현황	12
<표 2-9> 농가주택정비사업 현황	12
<표 2-10> 농가주택정비사업 참여 여부	13
<표 2-11> 농가주택정비사업이 실제 농촌주택개량에 도움이 되는 정도	13
<표 2-12> 주택정비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	14
<표 2-13> 정부유자 주택개량사업 참여의사	14
<표 2-14> 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5
<표 2-15> 저소득층 및 노인가구의 주택정비사업 활용정도 인식	15
<표 2-16> 농촌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	16
<표 2-17> 생활하수 및 오수 처리방식	17
<표 2-18>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17
<표 2-19> 재활용품 처리 방식	18
<표 2-20> 기타 생활쓰레기 처리 방식	18
<표 2-21> 폐비닐, 농약병 처리 방식	19
<표 2-22> 지역 농촌환경에서의 문제점	19
<표 2-23> 마을에서 집까지의 도로 상태	20
<표 2-24> 대중교통 이용시 불만사항	20

<표 2-25> 농촌지역의 교통여건에서의 문제점	21
<표 2-26> 농촌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시급한 개선과제	22
<표 3-1> 의료기관별 주 활용 이유	24
<표 3-1> 의료기관별 주 활용이유	25
<표 3-2> 의료기관별 연간 이용회수	26
<표 3-3> 의료기관별 소요시간	26
<표 3-4> 의료기관별 필요성과 충분성	27
<표 3-5> 지난 1년간 가구원의 건강진단 경험	28
<표 3-6> 지난 1년 간 필요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유무	28
<표 3-7> 필요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29
<표 3-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한 의료서비스 접근 장애요인	29
<표 3-9> 농부중에 대한 대처방식	30
<표 3-10> 불법 의료행위/의료기 판매 문제의 심각성 인식	31
<표 3-11> 의료서비스의 필요성과 충분성 인식	32
<표 3-12> 보건소의 활동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요망사항	33
<표 3-13> 지난 1년 간 가구원의 방문보건사업 이용경험 회수	34
<표 3-14> 공중보건의 근무현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34
<표 3-15> 의약분업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정도	36
<표 3-16> 의료보장 해당방식	36
<표 3-17> 의료보험료 및 본인부담 의료비와 부담 정도	37
<표 3-18> 의료비용 관련 상관관계표	37
<표 3-19> 도시근로자와 비교한 농업인들의 의료보험료 부담	38
<표 3-20> 농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	39
<표 4-1> 학교에 다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교육비 현황	41
<표 4-2> 학교에 다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사교육(과외) 유무	41
<표 4-3> 사교육(과외)의 유형	42
<표 4-4> 유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유무	42
<표 4-5> 유학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연평균 유학비용	43
<표 4-6> 유학을 하는 이유	43

<표 4-7> 통학 관련 여건	44
<표 4-8> 관할 지역 농촌학생들의 학교 접근성	45
<표 4-9> 희망하는 특기적성교육의 내용	46
<표 4-10> 농촌지역 학교의 특기적성교육 실효성	46
<표 4-11> 특기적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	47
<표 4-12> 농어촌지역 대학특별전형제도에 대한 인지	47
<표 4-13> 농어촌 대학특별전형제도가 농촌지역 학력증진에 대한 기여인식	48
<표 4-14> 농촌지역 학교통폐합에 대한 의견	49
<표 4-15> 농촌 학교와 도시지역 학교 간의 학력격차에 관한 인식	49
<표 4-16> 농촌교육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50
<표 5-1> 농가소득 및 부채추이	51
<표 5-2> 연평균 농가소득	52
<표 5-3> 농업 외의 직업활동과 소득	52
<표 5-4> 가구소득과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표	53
<표 5-5> 정기적으로 이전 받고 있는 소득의 유무	53
<표 5-6> 정기적인 이전 소득 유무별 평균소득 비교	53
<표 5-7>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사람	54
<표 5-8> 이전소득의 크기	54
<표 5-9> 월 평균 가구지출액수	55
<표 5-10> 지출액과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표	55
<표 5-11>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내용	55
<표 5-12> 농가부채 유무	56
<표 5-13> 부채가 있는 농가의 평균부채액수	57
<표 5-14> 부채액과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표	57
<표 5-15> 부채농가의 주 부채원	58
<표 5-16> 부채를 지게된 주 내역	58
<표 5-17> 10년 전과 비교할 때 현재의 생활수준	59
<표 5-18> 현재와 비교할 때 10년 후의 생활수준 전망	59
<표 5-19>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60

<표 5-20> 농가소득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 정도	60
<표 6-1> 준비하고 있는 노후대책	62
<표 6-2> 현재 노후대책의 충분성	63
<표 6-3> 가장 바람직한 노후대책	63
<표 6-4> 연금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정도	64
<표 6-5> 연금보험료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 정도	65
<표 6-6> 연금보험료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 정도	65
<표 6-7> 농어민연금 보험료 국가보조의 인식	66
<표 6-8> 농어민연금 보험료 국가보조의 한시성 인식	66
<표 6-9>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연금보험의 기여와 급여 원칙1	67
<표 6-10>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연금보험의 기여와 급여 원칙2	67
<표 6-11> 농어민연금제도 현황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68
<표 6-12> 농어촌지역 연금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69
<표 6-13> 국민연금신고소득과 농림부 파악 농가소득비료	69
<표 6-14>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소득평가액 기준	70
<표 6-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신청 경험	71
<표 6-16> 수급권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유	71
<표 6-17> 수급권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72
<표 6-18>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실시 이후 수급자 수 변화	73
<표 6-19>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실시 이후 급여수준 변화	73
<표 6-20>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식	74
<표 6-21> 급여신청을 했는데도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주 이유	75
<표 6-22> 농촌지역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적절성	75
<표 6-23> 관할 농촌지역 내에 자활후견기관의 유무	76
<표 6-24> 관할 농촌지역 내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유무 ...	76
<표 6-25> 농촌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77
<표 6-26>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정도	78
<표 6-27>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적용정도	78
<표 6-28>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인지정도	79

<표 6-29> 사회복지시설과 활동중인 사회복지사의 수	79
<표 6-30> 관할지역내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의 필요성 및 충분성	80
<표 6-31 > 농업인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정도	81
<표 6-32> 농업인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장애요인	81
<표 6-33> 가정 내 주 양육담당자	82
<표 6-34>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종류	83
<표 6-35>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평균 보육료	83
<표 6-36> 보육시설 이용의사	84
<표 6-37> 가장 필요한 학생·청소년 대상의 사회복지서비스	84
<표 6-38>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돌보아야 할 가구원 유무	85
<표 6-39> 돌보아야 할 가구원에 대한 부양자	85
<표 7-1> 농가의 컴퓨터 보유 여부	87
<표 7-2> 컴퓨터 보유 농가의 컴퓨터 활용정도	88
<표 7-3> 컴퓨터를 주로 활용하는 사람	88
<표 7-4> 컴퓨터를 활용하는 주된 용도	89
<표 7-5> 농가의 인터넷 활용	89
<표 7-6> 인터넷 사용자 중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	90
<표 7-7> 정보수집을 위해 농업인들이 인터넷에 의존하는 정도	91
<표 7-8> 농가의 정보화 교육 욕구	91
<표 7-9> 정보화 교육 욕구와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표	92
<표 7-10> 농가의 영농을 위한 컴퓨터 활용 의사	92
<표 7-11> 컴퓨터 영농 활용 의사와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표	92
<표 7-12> 정보화 교육 욕구와 영농 활용 의사 응답	93
<표 7-13> 학생교육을 제외한 농가의 정보화 교육 경험	93
<표 7-14> 정보화 교육의 주체	94
<표 7-15> 공공기관 정보화 교육이 농업인 정보화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	94
<표 7-16> 정보화 교육 경험과 정보화 교육 욕구 응답	95
<표 7-17> 농업인의 정보화 체계 접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	95
<표 7-18> 거주지역 내 위치를 알고 있는 문화시설	96

<표 7-19> 가구원의 지난 1년간 문화시설 이용경험	97
<표 7-20> 농업인들의 문화시설 이용 장애요인	97
<표 7-21> 지난 1년 간 마을잔치 개최회수	98
<표 7-22>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지난 1년 간 경험여부	99
<표 7-23>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지난 1년 간 개최여부	99
<표 7-24> 5년 전과 비교한 향토/민속문화의 보존에 대한 인식1	99
<표 7-25> 5년 전과 비교한 향토/민속문화의 보존에 대한 인식2	100
<표 7-26> 정부의 문화프로그램이 농업인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101
<표 7-27> 농촌을 떠날 의사의 여부	102
<표 7-28> 젊은 층 이농현상의 심각성	102
<표 7-29>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103
<표 7-30> 일상생활의 만족도	103
<표 7-3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104
<표 7-32> 정부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도움	105

제 I 장 농촌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개요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21세기에는 과거와 달리 제조업 등의 생산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및 환경과의 친화, 지역사회의 유지와 같은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면서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보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농업과 농촌의 상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사회에서 산업화 이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경제수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교육·의료·복지체계의 미흡, 경제여건의 피폐에 따른 농가부채문제의 심화 등 농촌지역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점은 이제 우리사회 일반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이농현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 폐교나 소규모화 등 교육여건의 악화로 인해 농촌과 도시지역의 학력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의료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화나 정보화 측면에서도 도시지역과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도 농촌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러한 점은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사안별로 농림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 조정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한편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추진목표가 상이하고 재정격차 등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복지증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구체적 청사진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농촌지역의 사회복지, 교육, 의료, 문화, 정보화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청사진을 기획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복지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기초적 정책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각 분야별로 분산적인 자료만이 수집되고 있고 농촌지역 주민의 종합적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수집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촌지역주민들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서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검토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마련은 해당 인구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생활실태 및 이들의 욕구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적인 운영방식은 특수한 인구집단의 생활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를 위한 기초조사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은 생활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수집과 여기서 파생되는 욕구의 특성 분석에 초점을 두게 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지역의 주민들과는 매우 다른 여건 하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농촌지역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이들의 독특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분석해야 할 필요를 낳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실태와 개선방안 분석(정명채 외, 1999), 국민건강보험의 농어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연구(정명채 외, 2000),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박대식 외, 2000), 농가도우미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명채 외, 1999) 등 특정 제도나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로부터 농촌주민을 위한 각 영역의 복지서비스 운영과 개선에

관한 중요한 함의들을 얻을 수 있으나 농업인들의 생활실태 전반에서 유추되는 전체적인 복지욕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반면 생활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많은 복지욕구조사들은 도시지역이나 빈곤계층 혹은 특정 복지시설에서 자신의 관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농촌지역 농업인의 욕구와는 상당히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농촌지역에서의 보건소는 도시지역에서 보건소가 가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이나 프로그램들도 주로 도시지역의 상황을 전제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표본을 통한 직접적인 실태와 복지욕구의 파악이 긴요한 과제가 된다. 농촌빈곤가족의 사회적 욕구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로는 충북 청원군 북2면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한 조홍식(1993)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리고 조홍식(2000)은 현재의 상황에서 농어민복지제도를 새로이 정비하는 데 개혁이 국가적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과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농어민복지정책 발전계획을 단기, 중장기별로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농어민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구조를 구축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이는 사안별 혹은 특정 제도에 국한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촌의 전반적 특성에 입각하여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기획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한편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시도들은 일차적으로 대상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욕구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즉, 욕구의 즉자성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객관성보다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욕구(needs)는 요구(wants)와는 구별되어 일정한 사회적 기준과 규범에 관련되는 측면이 있다. Bradshaw(1974)는 이와 관련하여 욕구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felt needs, expressed needs, comparative needs, normative needs가 그것인데 여기서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s)를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당사자들의 느껴진 욕구(felt needs)나 표현되는 욕구(expressed needs)가 가지는 주관적 욕구 측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 의한 규범적 욕구를 동시에 파악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복지욕구 파악에서도 농업인들의 직접적 의견과 아울러 이들의 복지관련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다 객관적 시각을 견지할 수 있는 관점

을 동시에 활용할 필요가 제기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수의 표본에 대한 서베이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농촌지역주민들의 실태와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농업인들에 대한 방문자료수집을 실시하며, 실태의 평가와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s)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우편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1) 농업인 조사

농업인 조사는 농촌지역을 면단위로 표집하고 이 면지역 내에서 해당 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일정 수의 가구를 선정하고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으로 추출된 지역이 농촌지역 일반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본 조사는 조사여건의 제약상 충분한 표본크기를 가질 수 없어 단순무작위추출에 의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는 어렵다. 따라서 농촌지역이 가지는 속성들을 반영한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이 필요하였다.

농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평야지역, 산간지역, 도시근접지역 등은 서로 다른 지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별 지역적 특성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지역적 특성은 농업인들의 생활실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복지욕구의 내용과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여 대도시와의 근접성이나 경작지 면적,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하여 강화군 서도면을 비롯한 전국 12개 면을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으로 추출된 곳은 다음 <표 1-1>과 같다. 실제 조사결과 분석에서 살펴본 바, 산간지역이나 평야지역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개별 농가는 단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양하여 지역별 혹은 지리적 특성별로의 복지욕구의 차이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

지는 않았다.

<표 1-1> 조사대상 농가의 지역별 분포

지역	조사 농가 수(%)	비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40(8.9%)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38(8.4%)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35(7.8%)	
강원도 철원군 서면	37(8.2%)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44(9.8%)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41(9.1%)	
충북 괴산군 청안면	41(9.1%)	
충남 부여군 양화면	56(12.4%)	
전북 김제시 죽산면	22(4.9%)	
전남 영암군 영암읍	24(5.3%)	
경북 상주시 낙동면	34(7.6%)	
경남 의령군 칠곡면	38(8.4%)	
합계	450(100.0%)	

이들 12개 면 지역에 대해서 2001년 4월 9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각 면 단위에서 40개의 농가를 기준으로 조사원이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 농가는 면 단위에서 해당 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표본가구를 추출하고 방문조사하였으며, 면 지역 방문 이전에 가구단위까지의 무작위추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조사문항의 아동보육이나 인터넷 관련 문항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무응답과 정보상실을 피하기 위해 농가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없도록 일부 속성을 가진 가구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방문하였다. 이는 농가의 영역별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약된 여건 하에서 일부 의도적인 표집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표본은 인구학적 구성 등에서 완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사

전국 4,700여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을 대상으로 500명의 전담공무원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001년 4월 10일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2001년 4월 27일까지 반송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료 중 2001년 4월 27일까지 설문지를 반송한 248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는데 이 중 남성이 135명으로 54.4%, 여성이 113명으로 45.6%이었다. 평균 연령은 33세이며 사회복지사로 활동한 경력은 평균 7.0947년, 해당 지역에서 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은 평균 4.4816년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내용

자료수집내용은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관련되는 종합적인 정보를 포괄하기 위해 농촌생활환경일반, 보건의료, 교육, 소득 및 경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타(정보화 및 문화)의 6개 영역에 걸쳐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초점화된 자료수집보다는 넓은 영역에 대한 개괄적인 실태와 욕구 파악이 중심이 되었다. 조사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t-test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제Ⅱ장 생활환경일반

이 장에서는 농업인들의 생활환경 일반에 대한 현황과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생활 일반과 관련된 식수, 연료, 주택,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교통 등의 생활여건과 정부의 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농업인과 농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견해를 살펴보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1. 생활용수 및 연료

1) 식수원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상수도 보급률이 85%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면지역의 경우에는 20% 수준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성향은 본 조사 결과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식수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농업인들은 주로 마을의 간이상수도나 자가관정(지하수)의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각각 40% 선의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10% 선에 불과하였다.

<표 2-1> 식수원 현황(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상수도(광역/지방)	46(10.2%)
간이상수도(마을)	176(39.1%)
대형암반과정(마을공동)	40(8.9%)
자가관정/우물	186(41.3%)
기타	2(0.4%)
합계	450(100.0%)

상수도 보급율이 낮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식수원의 수량과 수질에 대해서는 약 2/3에 해당하는 66% 가량의 농업인이 양호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14.2%의 농업인은 수질에 대한 불만을, 그리고 10% 가량의 농업인은 수량과 수질 모두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 식수의 수량과 수질에 대한 의견(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수량과 수질 모두 만족	298(66.2%)
수질은 만족하나 수량에 불만	44(9.8%)
수량은 만족하나 수질은 불만	64(14.2%)
수량과 수질 모두 불만	44(9.8%)
합 계	450(100.0%)

2) 수도 관련 비용

수도요금이나 혹은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이 월 평균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7,088원 정도로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표 2-3> 상수도에 소요되는 월 평균 비용(농업인 응답)

주 식수원 형태	월 평균 비용(단위: 원)	응답자수
상수도(광역/지방)	10193.33	45
마을 간이상수도	6026.09	138
마을 공동 암반과정	7786.36	22
자가관정(자가지하수)	5857.14	7
전체평균	7087.74	212

이 비용을 사용하는 식수원 시설별로 살펴볼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약 10,200원 가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마을 공동의 관정일 경우에 7,800원 가량으로 다음으로 높은 수치, 그리고 마을의 간이상수도과 자가관정의 경우 6,000원 가량의 비용으로 낮은 금액을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상수도 보급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수도관련 비용이 전기요금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금액을 정확히 분류하여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과정에서 자가관정이나 마을 공동의 암반과정 같은 경우에는 용수에 들어가는 비용액수를 따르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매우 많았다.

관할지역 농가의 식수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질문한 결과 수량문제를 23%가, 수질문제를 21.4%가 그리고 10% 가량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식수관련 비용부담을 문제로 꼽고 있었다.

<표 2-4> 식수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별 문제가 없다	108(44.3%)
수량이 부족한 상태	56(23.0%)
수질이 불량한 상태	53(21.4%)
식수 공급관련 비용부담	25(10.2%)
기타	2(0.8%)
합 계	244(100.0%)

3) 난방 및 취사연료

농가의 난방연료와 취사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농업인들은 난방연료로 70% 가량이 기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기가 18.4%, 연탄이 7.6%를 나타내고 있어 주로 기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사연료로는 LPG가 98.2%로 거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2-5> 난방연료와 취사연료(농업인 응답)

구 분	난방연료 응답자수(%)	취사연료 응답자수(%)
기름(석유)	312(69.3)	3(0.7)
연탄	34(7.6)	
LPG	6(1.3)	442(98.2)
채취한 나무	15(3.3)	2(0.4)
전기	83(18.4)	
무응답		3(0.7)
합계	450(100.0)	450(100.0)

4) 연료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하절기에는 월 평균 29,792원, 동절기에는 월 평균 192,45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월 평균 연료비(농업인 응답)

주 난방연료 구분	하절기난방비(원)	동절기난방비(원)
기름(석유)	31,433	223,290
연탄	22,544	86,758
LPG	14,167	110,000
채취한 나무	17,000	63,538
전기	29,728	141,561
전체평균	29,660	191,592

연료비는 어떠한 난방연료를 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사용하는 난방연료의 종류별로 보면 기름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연료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전기의 순이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 도시가스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의 난방이 가능한 것에 비교해 본다면 농촌지역 주민들의 난방비가 구조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관할지역 농업인들의 난방 및 취사용 연료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에서도 연료비 부담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는 경우가 75.4%로 별 문제가 없다(16.9%), 공급이 원활치 않다(5.2%), 안전성 문제(2.4%) 등 다른 응답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연료비 부담이 상당히 큰 문제임을 반증하고 있다.

<표 2-7> 농가의 난방 및 취사 연료 사용과 관련된 문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별 문제가 없다	42(16.9%)
비용부담	187(75.4%)
공급이 원활치 않다	13(5.2%)
안전성	6(2.4%)
기타	
합계	248(100.0%)

2. 주택현황 및 주택개량사업

농업인들의 주거현황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대부분인 92.2%가 주거가 자가인 것으로

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 농가 주택소유 현황(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자가	415(92.2%)
전세	9(2.0%)
월세	7(1.6%)
무료거주	13(2.9%)
기타	6(1.3%)
합계	450(100.0%)

그러나 농촌지역은 주택의 절대부족과 같은 소유의 문제보다도 주거환경과 관련된 주택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 주택 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부, 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 산림청 등의 정부부처에서 농가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9> 농가주택정비사업 현황

사업명	주관부서	주요 내용
정주권 개발사업	농림부	○ 정주권대상면의 주택을 대상으로 함 - 주택신축 : 호당 2,000만원 융자(5.5%) - 주택개량 : 호당 500만원 융자(4.0%)
문화마을조성사업	농림부	○ 사업지구 농어촌 주택을 대상으로 함 - 주택신축 : 호당 2,000만원 융자(5.5%) - 주택개량 : 호당 500만원 융자(4.0%)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진흥청	○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함 - 부엌개량+목욕실 : 농가당 420만원 융자(4.0%) - 화장실개량 : 농가당 280만원 융자(4.0%)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자치부	○ 전용면적 100㎡이하 농어촌 주택 대상 - 호당 2,000만원까지 융자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청	○ 산촌개발대상마을의 주택 대상 - 마을당 4억원 범위내에서 주택 신축/개축 융자금 신청

이러한 농가주택정비사업은 용자제도를 통한 자금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사업을 통해 주택을 개량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 농업인의 30.7%인 138가구가 정부의 용자를 받아 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을 개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농가주택정비사업 참여 여부(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주택개량사업의 용자를 받아 주택을 개량한 적이 있다	138(30.7%)
주택개량사업의 용자를 받아 주택을 개량한 적이 없다	311(69.3%)
합계	449(100.0%)

주택개량에 참여한 경우, 화장실이나 부엌, 부속사 등 특정한 부분만 개량하는 경우보다는 전체가옥구조를 개량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3/4 정도인 107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주택정비사업은 1994년 이후 2000년까지 신축 362,411호, 개량 1,593,525호의 사업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이 사업이 관할 지역 농촌주민들의 주택개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2-11> 농가주택정비사업이 실제 농촌주택개량에 도움이 되는 정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5(14.1%)
그저 그렇다	52(21.0%)
약간 도움이 된다	94(37.9%)
매우 도움이 된다	64(25.8%)
합계	248(100.0%)

그 결과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15.3%에 불과한 반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은 63.7%에 달해 주택정비사업이 상당히 농촌주택개량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정부지원 주택개량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가장 크게 개선되어야 할 불만사항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융자금액이 작다는 점(35.4%)과 이자부담이 크다는 점(31.3%)이 많은 응답자에게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정부지원 주택개량사업의 개선점으로 융자금액의 부족(57.6%), 번거로운 절차(21.0%), 지원대상이 적다는 점(10.5%)을 들고 있다.

<표 2-12> 주택정비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

구분	사업참여농업인 응답자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자수(%)
융자금액의 부족	35(35.4%)	143(57.9%)
융자금 집행의 지연	8(8.1%)	6(2.4%)
번거로운 절차	19(19.2%)	53(21.5%)
높은 이자부담의 경감	31(31.3%)	20(8.1%)
사업 대상의 확대	5(5.1%)	25(10.1%)
합계	99(100.0%)	247(100.0%)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지원의 융자를 통한 주택개량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25%에 해당하는 농업인들만이 활용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3> 정부융자 주택개량사업 참여의사(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참여의사가 있다	112(25.1%)
참여의사가 없다	334(74.9%)
합계	446(100.0%)

물론 주택개량의 의사가 없는 농업인 중에는 특별히 집을 고쳐야 할 긴급한 욕구가 없다는 이유가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자부담 때문에 집을 고치고 싶어도 용자제도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주택개량사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의 20.4%를 차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과 같은 저금리 환경과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자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표 2-14> 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특별히 집을 고칠 곳이 없다	203(61.0%)
용자금액이 너무 적다	16(4.8%)
용자금 집행이 늦다	
절차가 번거롭다	17(5.1%)
이자부담이 크다	68(20.4%)
기타	29(8.7%)
합계	333(100.0%)

저소득층 농업인가구를 많이 접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저소득층 농가의 주택정비사업 혜택 정도를 질문하였다.

<표 2-15> 저소득층 및 노인가구의 주택정비사업 활용정도 인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다른 계층보다 적게 활용하고 있다	201(81.0%)
비슷하다	36(14.5%)
다른 계층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다	11(4.4%)
합계	248(100.0%)

그 결과 저소득층 농가는 주택개량사업을 다른 계층에 비해 더 적게 활용한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인 81.2%를 나타내고 있어(비슷하다는 14.2%, 더 많이 활용한다는 응답은 4.6%에 불과) 주택정비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농가나 노인가구는 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농가의 주택개량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3. 쓰레기 및 하수 처리

과거에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청정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관할지역 농촌의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 가량인 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의 57.2%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의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고 있다.

<표 2-16> 농촌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1.6%)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43(17.3%)
보통이다	59(23.8%)
약간 문제가 된다	98(39.5%)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44(17.7%)
합계	248(100.0%)

이와 같은 응답은 5점 척도(1점-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점-매우 심각한 문제

이다)로 수치화할 경우 평균 3.544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업인들에게 생활하수 및 오수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정용 정화조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55.1%로 다수를 나타내었으나 전체의 43.1%인 194가구의 경우 그냥 하천이나 수로에 방류한다고 응답하여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7> 생활하수 및 오수 처리방식(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하천이나 수로에 방류	194(43.6%)
가정용 정화조의 사용	248(55.7%)
하수처리장 연결	1(0.2%)
기타	2(0.4%)
합계	445(100.0%)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는 농촌의 특성상 가축 사료나 퇴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4/5인 80%선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2-18>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매립	34(7.6%)
소각	12(2.7%)
쓰레기 봉투에 담아 수거차량이용	43(9.6%)
일반봉투에 담아 분리하지 않고 버림	3(0.7%)
동식물 사료	354(79.4%)
합계	446(100.0%)

재활용품 처리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하여 수거차량을 이용하거나(50.7%), 부녀회

등을 통한 판매(20.4%)가 높은 응답을 보여 이에 대한 재활용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19> 재활용품 처리 방식(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따로 분리하여 수거차량 이용	228(50.7%)
분리하지 않고 내다 버림	15(3.3%)
판매	92(20.4%)
매립	7(1.6%)
소각	71(15.8%)
기타	37(8.2%)
합계	450(100.0%)

그러나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등을 활용하지 않고 각각의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 중 소각이 대부분의 처리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0> 기타 생활쓰레기 처리 방식(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매립	12(2.7%)
소각	382(85.1%)
쓰레기봉투에 담아 수거차량 이용	49(10.9%)
일반봉투에 담아 분리하지않고 버림	5(1.1%)
기타	1(0.2%)
합계	449(100.0%)

폐비닐이나 농약병 등의 수거와 처리는 원래 자원재생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공동으로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기에는 수거비 보상이 적어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매립이나 소각하는 방식이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2-21> 폐비닐, 농약병 처리 방식(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개별적으로 매립 및 소각	82(19.9%)
마을 공동으로 매립 및 소각	173(42.0%)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	14(3.4%)
공동수거하여 판매 및 처리	143(34.7%)
합계	412(100.0%)

이러한 양상을 전체적으로 볼 때 농가의 하수나 쓰레기 처리 방식은 환경오염의 소지를 크게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관할지역 농촌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수 응답(33.5%)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농축산 폐수 문제(20.2%)가 제기되었다.

<표 2-22> 지역 농촌환경에서의 문제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생활하수의 방류	35(14.1%)
농축산 폐수의 처리	50(20.2%)
폐비닐, 농약병 등 농업 폐기물	33(13.3%)
생활쓰레기	83(33.5%)
외지인들의 오염행위	45(18.1%)
기타 및 무응답	2(0.8%)
합계	248(100.0%)

4. 도로 및 교통여건

마을에서 집까지의 도로상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농업인의 약 70%가 차량출입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약 15%의 농업인은 도로 폭이 좁다는 문제를, 그리고 11% 가량은 도로 폭이 좁고 포장도 되어있지 않은 중복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표 2-23> 마을에서 집까지의 도로 상태(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차량출입에 지장이 없음	317(70.6%)
포장은 되어 있으나 도로폭이 좁아 불편함	67(14.9%)
도로폭은 넓으나 포장이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	14(3.1%)
도로폭도 좁고 포장도 되어있지 않음	51(11.4%)
합계	449(100.0%)

대중교통 이용시에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배차간격의 문제가 52.4%으로 다수의 농업인에게서 제기되었고 다음으로는 비용의 문제가 12.0%의 농업인에게서 주요한 불만사항으로 제기되었다.

<표 2-24> 대중교통 이용시 불만사항(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배차간격	236(52.4%)
비싼 요금	54(12.0%)
불친절	11(2.4%)
노후한 차량	9(2.0%)
불편한 점 없음	107(23.8%)
기타	33(7.3%)
합계	450(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관할지역 농업인의 교통여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서는 전체의 64.2%가 대중교통수단의 양적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많은 응답인 14.4%가 대중교통연결망의 결여를 이야기하고 있어 농업인응답에서 배차간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이 아직도 가장 큰 교통문제에서의 욕구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5> 농촌지역의 교통여건에서의 문제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마을 도로의 낙후	25(10.3%)
대중교통수단의 양적 부족	156(64.2%)
차량의 노후화	6(2.5%)
요금부담	15(6.2%)
교통사고의 위험성	3(1.2%)
대중교통연결망 결여	35(14.4%)
기타 및 무응답	3(1.2%)
합계	243(100.0%)

5. 생활환경일반에서의 정책 과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관할지역 농업인의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결과에서는 비교적 여러 사항에 대해 고른 응답이 나타나고 있으나 농축산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과 주택개량지원 사업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비교적 많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6> 농촌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시급한 개선과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주택개량지원사업 확충	49(20.3%)
정화조 및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48(19.9%)
식수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10(4.1%)
도로 및 교통상황 개선	38(15.8%)
폐비닐/농약병 등 농축산 폐기물 처리 지원	67(27.8%)
쓰레기 분리수거 방안 강구	17(7.1%)
기타	12(5.0%)
합계	241(100.0%)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볼 때, 농촌생활여건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는 식수나 연료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장기적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사용의 질이나 안전성은 떨어지면서 비용은 더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정기적인 수질검사나 연료사용의 안전검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농촌지역 주택정비사업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가장 큰 욕구(needs)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초점을 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가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의 경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융자금액규모의 확대 등의 욕구도 표출되고 있으나 이는 농가부채 문제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농축산 폐기물들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원재생공사 위탁사업에 대한 강화나 수거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농촌의 쓰레기 처리는 상당 부분 농가나 작은 마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촌

에서는 환경오염이 식수 등을 통해 직접 농업인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로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도 농촌의 대중교통망 부족에 대한 불만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이는 단지 교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 교육, 문화자원이 지역적으로 산재하여 넓게 분포하고 있는 농촌의 생활여건을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일 것이다.

제Ⅲ장 보건·의료

본 장에서는 농업인들의 보건의료 실태와 아울러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장시대를 맞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의료기관의 도시지역 편중, 의료비 부담의 과중, 약물의 오남용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욕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우선 의료기관 이용실태와 욕구,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실태, 보건소의 활동에 대한 욕구, 의약분업관련 문제, 의료비 문제의 순서로 살펴보고 정책적 과제를 모색한다.

1. 의료기관 이용

1) 의료기관별 활용이유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의료기관을 주로 활용하는 이유가 의료기관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표 3-1> 의료기관별 주 활용 이유(농업인 응답)

이유 구분	종합병원 선택 응답자수(%)	병의원 선택 응답자수(%)	한의원 선택 응답자수(%)
시설과 규모가 커서	127(90.7%)	88(23.6%)	6(3.2%)
비용이 저렴해서	1(0.7%)	5(1.3%)	1(0.5%)
거리가 가까워서	5(3.6%)	244(65.4%)	100(53.8%)
친절해서		2(0.5%)	2(1.1%)
다른 곳을 이용하기 번거로워서	1(0.7%)	5(1.3%)	7(3.8%)
기타	6(4.3%)	29(7.8%)	70(37.6%)
합계	140(100.0%)	373(100.0%)	241(100.0%)

종합병원을 주로 활용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시설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의 병의원이나 보건소, 한의원, 약국 등에 대해서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주 사용 이유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26.6%), 약국의 경우에는 다른 곳을 이용하기가 번거로워서 이용(22.9%)한다는 응답도 비교적 많이 나타난 응답이었다.

친절도가 의료기관 이용에 차별성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거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에 친절하다는 응답은 한 사례도 없었고 이는 약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표 3-1> 의료기관별 주 활용이유(계속)

이유 구분	보건소 선택 응답자수(%)	약국 선택 응답자수(%)
시설과 규모가 커서	2(0.6%)	4(0.9%)
비용이 저렴해서	85(26.6%)	18(6.0%)
거리가 가까워서	213(66.8%)	184(61.1%)
친절해서	3(0.9%)	
다른 곳을 이용하기 번거로워서	6(1.9%)	69(22.9%)
기타	10(3.1%)	26(8.6%)
합계	319(100.0%)	373(100.0%)

2) 의료기관별 연간 이용회수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별로 연간 이용회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여기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의 입원일수로 이용회수를 산정하였다. 가구단위로 의료기관별 이용회수는 병의원의 경우가 30회 가량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는 약국, 종합병원, 보건소, 한의원의 순으로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보건소의 이용회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

<표 3-2> 의료기관별 연간 이용회수(농업인 응답)

의료기관 구분	가구원 연간 의료기관 이용회수
종합병원	17.2483
병의원	30.3333
한의원	11.5241
보건소	14.9151
약국	21.1386

3) 의료기관별 소요시간

의료기관별 접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의료기관까지 편도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질문하였다.

<표 3-3> 의료기관별 소요시간(농업인 응답)

의료기관 구분	편도에 걸리는 시간 (단위 분)
종합병원	110.5532
병의원	39.6712
한의원	41.0108
보건소	13.4462
약국	26.4716

응답결과는 역시 종합병원이 약 2시간에 달하는 111분 가량의 소요시간을 나타내

어 가장 접근성이 떨어졌고 보건소가 대략 13분 가량으로 가장 접근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병의원이 40분, 한의원이 41분, 약국이 26분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 의료기관이 취약한 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한 의료기관

의료기관별로 얼마나 긴급히 필요하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충분한 의료기관이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5점(1점-전혀 필요(충분)하지 않다, 5점-매우 필요(충분)하다)의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필요성은 약 4점대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충분성은 역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3-4> 의료기관별 필요성과 충분성(1점-5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의료기관 구분	필요성	충분성
종합병원	3.8673	1.7590
병의원	3.9306	2.5150
보건소	4.0469	3.3684
약국	4.1142	2.7760

각 의료기관의 필요성은 고루 높게 인식되는 반면 충분성은 점수의 편차가 큰데 특히 종합병원의 부족함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비교적 보건소가 충분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도 역시 대형 의료기관의 대도시 편중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의료서비스 이용

1) 건강진단 경험

지난 1년간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치료목적 이외에 건강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70% 가량이 1회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3-5> 지난 1년간 가구원의 건강진단 경험(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없다	314(69.8%)
있다	136(30.2%)
합계	450(100.0%)

2)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

농업인들에게 질환으로 인해 의사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중 약 26%의 농업인이 필요한데도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지난 1년 간 필요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유무(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없다	329(73.9%)
있다	116(26.1%)
합계	450(100.0%)

필요한 때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의료기관을 활용할만한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은 응답(35%)을 나타내었고, 다음이 진료비 부담(22.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필요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돈이 없어서	28(22.8%)
시간이 없어서	43(35.0%)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19(15.4%)
번거로워서	19(15.4%)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7(5.7%)
기타	7(5.7%)
합계	123(100.0%)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서 농업인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장애요인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가 70% 가량으로 나타났고 진료비 부담은 14.5%로 나타났다.

<표 3-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한 의료서비스 접근 장애요인

구분	응답자 수(%)
의료비 부담	35(14.5%)
시간이 없어서	8(3.3%)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170(70.5%)
번거로워서	7(2.9%)
보건의식의 결여	14(5.8%)
기타	7(2.9%)
합계	241(100.0%)

이러한 결과에 기반해 볼 때, 농업인의 의료비에 대한 보장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을 살펴볼 수 있다.

3) 농부증 대처 방식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농업인들이 도시거주자에 비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어떤 실태인가를 묻는 질문(1점-훨씬 적다; 5점 훨씬 많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3.22점을 나타내어 농촌주민들이 도시지역주민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의료서비스 수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농촌의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욕구의 증가라는 측면과 아울러 농업노동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인 ‘농부증’과도 관련된다. 농부증에 대한 대처방식을 질문한 결과 농부증 증상을 느끼는 농업인들은 응답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5.1%가 그냥 참고 견딘다고 응답하여 의료수요에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을 반증하고 있다.

<표 3-9> 농부증에 대한 대처방식(농업인 응답)

농부증에 대한 대처방식	응답자수(%)
물리치료	41(11.5%)
한방진료	35(9.9%)
의료기기 구입 활용	11(3.1%)
병원진료	63(17.7%)
보건소(지소, 진료소) 활용	47(13.2%)
약국이용	60(16.9%)
그냥 참고 견딘다	89(25.1%)
기타	9(2.5%)
합계	355(100.0%)

4) 불법의료행위

농촌지역에서의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기 판매 등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농촌 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지역의 32.3%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3-10> 불법 의료행위/의료기 판매 문제의 심각성 인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3(9.3%)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64(25.8%)
그저 그렇다	56(22.6%)
약간 문제가 된다	52(21.0%)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8(11.3%)
잘 모르겠다	25(10.1%)
합계	248(100.0%)

이러한 양상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적절한 불법의료관련 행위에 의한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의료서비스의 영역별 필요성과 충분성

기존의 병원 진료 이외에 농촌지역에서 필요할 수 있는 몇가지 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충분성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질문하였다. 한방진료, 물리치료, 치과진료, 방문보건사업, 예방업무의 5가지 의료서비스에 대해 충분성과 필

요성에 대해 각각 5점으로 질문한 결과 역시 필요성은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충분성은 2점대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3-11> 의료서비스의 필요성과 충분성 인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의료서비스 구분	필요성	충분성
한방진료	4.1096	2.1579
물리치료	4.2601	2.1510
치과진료	4.1892	2.3679
방문보건사업	4.3644	2.4897
예방업무	4.3139	2.5436

이러한 점수분포는 앞서 살펴보았던 병의원 진료에서 보이는 필요성과 충분성의 격차보다도 더 큰 점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이외에도 농촌지역에서 긴요한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공급계획이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

3. 보건소 관련 사항

1) 보건소 활동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요망사항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취약한 관계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소(지소/진료소)는

그간 농촌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보건소의 활동에 관해 여러 가지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인들은 병원과 같은 수준의 진료를 해주기를 요망(34%)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인력과 장비의 보강(21%) 응답이 많아 역시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보건소의 가장 시급한 개선요망사항은 역시 일차적으로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언급하고 있다.

<표 3-12> 보건소의 활동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요망사항

구분	농업인 응답자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자수(%)
방문진료 확대	37(8.7%)	50(21.1%)
물리치료 강화	61(14.4%)	25(10.5%)
한방치료 강화	28(6.6%)	12(5.1%)
병원과 같은 수준의 진료	144(34.0%)	64(27.0%)
장비와 의사 보강	89(21.0%)	58(24.5%)
셔틀버스 운행	25(5.9%)	8(3.4%)
야간진료	36(8.5%)	17(7.2%)
기타	3(0.7%)	3(1.3%)
합계	423(100.0%)	237(100.0%)

이 밖에도 농업인들에게서는 물리치료 서비스를 강화해주기를 원하는 응답이 14.4%로 많이 나타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서는 방문진료의 확대가 21.1%로 보건소의 역할로서 높은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2) 방문보건사업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을 이용한 회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지난 1년간의 평균 이용회수는 0.5282회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극히 미흡한 전시성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3> 지난 1년 간 가구원의 방문보건사업 이용경험 회수(농업인 응답)

응답자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443	0.5282	0	36

특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80%를 넘는 366가구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며, 단 1회만 경험한 농가가 9.5%로 2회 이상 경험한 가구는 전체의 8%도 되지 않는 35가구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욕구는 높게 표출되고 있으므로 이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공중보건의 근무에 대한 문제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공중보건의의 진료업무와 관련되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역시 의무복무로 인해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조사 결과 가장 다수의 응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소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구축이 매우 긴급하다고 하겠다.

<표 3-14> 공중보건의 근무현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자수(%)
잡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지속성 결여	61(26.1%)
근무시간과 농업인 이용시간의 괴리	53(22.6%)
의무복무로 인한 책임감 결여	97(41.5%)
잡은 이석	15(6.4%)
기타	8(3.3%)
합계	234(100.0%)

4. 의약분업

조사 대상자 농업인들의 응답결과 약 절반에 해당하는 52.8%가 의약분업대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응답되었고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45.9%가 제외지역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에서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이 높은 비율로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대략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의약분업 제외지역이 많다는 것은 농촌지역에서의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의약분업의 해당지역이고 그 인접지역이 해당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의 편리성만 따라 인근 지역을 넘나들며 약품 구매와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활용 편리성 변화를 농업인에게 5점으로 질문한 결과는 1.4716점으로 나타나 분업 이전보다 훨씬 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5점의 질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1점은 불편성과 의료비 부담의 가중이 심한 상태, 5점은 편리성과 의료비 부담 경감이 많이 나타난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응답결과에서도 의

료시설활용의 편리성은 1.7578점, 의료비용경감은 1.8372점으로 나타나 불편함이 증가하고, 의료비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표 3-15> 의약분업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정도(1점-5점)

구분	응답평균점수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농업인 응답)	1.4716
의약분업 이후 의료시설 활용 편리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1.7578
의약분업 이후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1.8372

5. 의료비 관련 실태와 욕구

의료보장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 농업인의 63.1%는 본인의 국민건강보험에 26.7%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직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의료보호에 해당되는 가구는 전체의 5.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6> 의료보장 해당방식(농업인 응답)

의료보장방식	응답자 수(%)
가구주의 건강보험	284(63.1%)
자녀 등 가족의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120(26.7%)
자녀 등 가족의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19(4.2%)
의료보호	25(5.6%)
무응답	2(0.4%)
합계	450(100.0%)

월 의료보험료는 평균 34,547원으로 조사되었다. 의료보험료는 응답된 가구소득 (.277**) 및 가구원수(.253**)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어 규정에 따른 기본적인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농가의 본인부담 의료비 액수는 연 평균 783,331원 정도로 나타났다.

<표 3-17> 의료보험료 및 본인부담 의료비와 부담 정도(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 평균
월 평균 건강보험료	34,547원
연 평균 의료비	783,331원
보험료에 대한 부담 정도(1점-5점)	4.3257
의료비에 대한 부담 정도(1점-5점)	3.5404

보험료 부담에 대해 5점(1점-전혀 부담이 안됨, 5점-매우 부담이 큼)으로 부담정도를 질문한 결과 평균 4.3257을 나타내어 상당히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절대 액수가 더 큰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정도보다도 훨씬 높게 인식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보험료 액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343**) 지각된 보험료 부담이 가구소득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3-18> 의료비용 관련 상관관계표

구분	보험료	보험료 부담	의료비	의료비 부담	가구소득	가구원수	질환자
보험료	1.0000	.343**	.144*	-.051	.277**	.253**	-.045
보험료 부담	.343**	1.0000	.021	.082	-.048	.043	-.037
의료비	.144*	.021	1.0000	.434**	.081	.081	.231**
의료비 부담	-.051	.082	.434**	1.0000	-.047	-.032	.199**

* p < .05 ** p < .01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부담정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5점으로 질문한 결과 평균 3.5404점을 나타내어 부담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보험료 부담보다는 작게 인식되고 있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의료비 액수 사이에는 상관관계(.434**)가 있으며, 가구원 중 질환자의 존재와도 상관관계(.199**)를 보이고 있다.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 유사한 소득수준의 도시근로자와 비교할 경우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 정도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 농촌지역이 보험료 부담이 덜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5% 선인데 비해 농촌지역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응답은 전체의 36.3%에게서 나타나 농촌지역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5점으로 수치화하여 환산할 경우(1점-농촌지역이 매우 저렴, 5점-농촌지역이 매우 비쌌)에 평균 3.2217점으로 농촌지역이 보험료를 약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을 나타낸다.

<표 3-19> 도시근로자와 비교한 농업인들의 의료보험료 부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도시지역에 비해 부담이 매우 작다	14(5.6%)
도시지역에 비해 부담이 약간 작다	48(19.4%)
비슷하다	63(25.4%)
도시지역에 비해 부담이 약간 크다	52(21.0%)
도시지역에 비해 부담이 매우 크다	38(15.3%)
잘 모르겠다	33(13.3%)
합계	248(100.0%)

이러한 결과는 의료자원의 접근기회가 더 제약된 농촌의 상황에서 의료보험료 부담이 도시지역보다 더 크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된다.

6. 농촌지역 보건의료문제에 관한 정책 과제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농업인들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농업인들은 병원의 확충, 의료비 지원과 아울러 물리치료에 대한 욕구를 높게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질문을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한 결과에서는 일반병원의 확충과 함께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응급의료체계 정비, 물리치료 강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0> 농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

구분	농업인 응답자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자수(%)
방문보건사업강화	51(11.7%)	53(22.6%)
일반병원 확충	79(18.2%)	63(26.9%)
보건소(지소, 진료소) 확충	45(10.3%)	20(8.5%)
응급의료체계정비	33(7.6%)	27(11.5%)
물리치료강화	56(12.9%)	26(11.1%)
한방진료강화	20(4.6%)	15(6.4%)
의료비 지원	68(15.6%)	6(2.6%)
야간진료체계정비	37(8.5%)	11(4.7%)
보건소에 의료인력 확충	39(9.0%)	13(5.6%)
기타	7(1.6%)	
합계	435(100.0%)	234(100.0%)

이와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해당 농촌지역에 가장 충원이 필요한 보건 의료인력이 누구인지를 질문한 결과 의사(46.8%)가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의 응답이 물리치료사(18.6%)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관련 인력 중 물리치료사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분야이

므로 이들을 농촌지역 보건의료 수요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에 기반하여 살펴볼 때, 농촌지역 보건의료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농업인들에게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일반 의료기관의 확충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나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의료기관의 확충을 꾸준히 추진함과 아울러 농촌에 특히 욕구가 높은 물리치료나 한방진료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와 관련된 노인성 질환이나 농부중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 등 비교적 자원이 풍부한 인력들을 농촌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현재 농촌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많아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면서 불법의료행위나 의료기 판매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농업인은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이용여건은 열악한 상태에서도 의료보험료 부담은 과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 부담보다도 보험료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이에선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적절한 홍보나 기술적인 조정이 미흡한 점도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넷째, 보건소의 역할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중보건의의 진료가 보다 성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욕구가 높은 방문보건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Ⅳ장 교육

1. 교육비

1) 공·사교육비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령기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들의 공교육비 지출은 연 평균 2,847,75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의 경우는 월 평균 79,888원 즉, 8만원 선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96만원 선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4-1> 학교에 다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교육비 현황(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교육비 평균(원)
연간 평균 공교육비	273	2,847,750원
1개월 평균 사교육비	248	79,888원

사교육비의 규모가 작은 것은 농촌지역에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많은 농업인(50%)이 사교육을 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결과와 관련된다. 월 10,000원 이상의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의 사교육비 평균은 월 161,000원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 학교에 다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사교육(과외) 유무(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사교육(과외)를 하지 않고 있다	131(47.0%)
사교육(과외)를 하고 있다	148(53.0%)
합계	279(100.0%)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양태 중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학습지 구독으로 19.8%를 나타내었고 다음은 컴퓨터 등 기능학습 학원이 19%, 예체능 교육이 18.6%, 보습학원이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사교육(과외)의 유형(농업인 응답-복수응답-)

구분	과외를 하고 있는 응답자수(%)
학습지	53(19.8%)
개인과외	4(1.5%)
예체능학원	49(18.6%)
보습학원	45(17.1%)
컴퓨터 등 기능학원	50(19.0%)
기타	7(2.7%)
아무 과외도 하지 않는다	131(47.0%)

2) 유학비용

특히 농촌에서 교육비가 많이 들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 유학에 대해 조사하였다. 유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8%에 해당하는 115가구가 유학을 하는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유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유무(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유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다	115(25.8%)
유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이 없다	330(74.2%)
합계	445(100.0%)

이들의 연간 유학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액수는 가구당 평균 4,787,722원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는 연간 1천5백만원의 유학비용을 들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장에서 기술하겠지만 본 조사 결과 조사대상 농가의 연평균 가구총소득액이 1,770 만원 정도로 나타난 점에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비용부담임이 드러난다.

<표 4-5> 유학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연평균 유학비용(농업인 응답)

응답자수	평균(원)	최소값(원)	최대값(원)
101	4,787,722	150,000	15,000,000

유학을 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유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 더 좋은 학교로의 진학(40.9%)과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34.8%)라는 이유가 다수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표 4-6> 유학을 하는 이유(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집 가까이에 학교가 없어서	40(34.8%)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47(40.9%)
특기를 살리기 위해	10(8.7%)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실력이 안됨	16(13.9%)
기타	2(1.7%)
합계	115(100.0%)

2. 농촌 교육여건

조사 결과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계획은 여아의 경우 전체의 75%이상이, 남아의 경우 85% 이상이 대학교육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열이 상당히 높으며 성차별이 일부 있으나 그 정도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농촌 교육여건은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통학여건

통학에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의 경우 평균 13.43분, 초등학교의 경우 11.59분, 중학교의 경우 15.95분, 고등학교는 25.05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통학비용은 유치원의 경우 월 평균 65,000원, 초등학교는 월 평균 21,796원, 중학교는 40,624원, 고등학교는 60,039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치원아의 경우가 통학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됨을 볼 수 있다.

통학방법은 유치원은 셔틀버스(60%),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도보(51.2%),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버스(중학교는 54.1%, 고등학교는 65.2%)가 가장 주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복합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4-7> 통학 관련 여건(농업인 응답)

구분	통학시간 (단위 : 분)	월 평균 통학비용 (단위 : 원)	주된 통학방법
유치원	13.4268	65,000원	셔틀-60%, 도보-28.6%
초등학교	11.5862	21,795원	도보-51.2%, 버스와 도보-20.9%
중학교	15.9494	40,623원	버스-54.1% 버스와 도보-23.0%
고등학교	25.0462	60,039원	버스-65.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관할 지역 농촌학생들의 학교접근 용이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불편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4 가량에서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농촌 지역 학생들의 학교접근성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표 4-8> 관할 지역 농촌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매우 불편	80(32.4%)
약간 불편	105(42.5%)
보통	50(20.2%)
약간 편리	9(3.6%)
매우 편리	3(1.2%)
합계	247(100.0%)

이러한 응답결과는 5점 척도로(1점-매우 불편, 5점-매우 편리) 수치화하여 환산할 경우 1.9832로 상당히 불편한 여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2) 특기적성교육

현재 각급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학교의 특기적성교육 내용에 대해 그 종류가 획일화 되어있고 교육내용과 장비 등이 노후하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왔다. 우선 농업인들에게 특기적성교육의 내용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을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 희망하고 있는 교육 내용은 컴퓨터 관련 교육이 48.8%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 교육이 20.2%, 외국어 교육이 14.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9> 희망하는 특기적성교육의 내용(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학교수업내용 관련 보충학습	3(1.8%)
외국어 교육	24(14.3%)
컴퓨터 관련 교육	82(48.8%)
예체능 관련 교육	34(20.2%)
기타	25(14.9%)
합계	168(100.0%)

현재 농촌지역에서의 특기적성교육의 실효성에 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55%가량으로 나타나 그다지 실효성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응답은 5점(1점-전혀 실효성이 없음, 5점-매우 실효성이 높음)으로 수치화하여 살펴 볼 경우 평균 2.6710을 나타내어 다소 낮은 실효성 인식으로 볼 수 있다.

<표 4-10> 농촌지역 학교의 특기적성교육 실효성(전담공무원응답)

구분	응답자 수(%)
전혀 실효성이 없다	18(7.5%)
별로 실효성이 없다	113(47.1%)
보통이다	56(23.3%)
약간 실효성이 있다	35(14.6%)
매우 실효성이 있다	18(7.5%)
합계	240(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농촌학교의 특기적성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설비의 확충이 39.7%로 가장 다수 응답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의 기자재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적절한 특기적성교육을 수

행하기에는 특기교육의 환경이 낙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내실 있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1> 특기적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교육 내용의 다양화	73(30.2%)
장비와 설비의 확충	96(39.7%)
특기적성교육비 부담 경감	32(13.2%)
벽오지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37(15.3%)
기타	4(1.7%)
합계	242(100.0%)

3) 농어촌지역 대학특별전형제도

현재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우수학생을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대학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읍·면 소재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고 그 기간 중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나 12년 간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다닌 학생에 대해 대학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3%) 이내에서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대학특별전형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 농업인들의 45.5%만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특별전형제도를 모르고 있는 농업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농어촌지역 대학특별전형제도에 대한 인지(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특별전형제도에 재해 알고 있다	202(45.5%)
특별전형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	242(54.5%)
합계	444(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농어촌지역 대학특별전형제도가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우수학생유치와 학력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 실제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42.4%로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인 35%보다 많아 그다지 큰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는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 응답을 5점 척도(1점-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5점-매우 기여하고 있다)의 수치로 환산하면 평균 2.9060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의 실효성 인식으로 볼 수 있다.

<표 4-13> 농어촌 대학특별전형제도가 농촌지역 학력증진에 대한 기여인식
(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20(8.2%)
별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83(34.2%)
그저 그렇다	55(22.6%)
약간 기여하고 있다	69(28.4%)
매우 기여하고 있다	16(6.6%)
합계	243(100.0%)

4) 농촌지역 학교통폐합 및 학력 격차

농촌지역 학교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농업인들은 찬성의 의견이 36.5%, 반대의 의견이 44.5%로 약간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는 경향이 많았다.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은 농업인의 의견보다 다소 반대 의견이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4-14> 농촌지역 학교통폐합에 대한 의견

구분	농업인 응답자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자수(%)
매우 반대	87(20.6%)	57(24.3%)
약간 반대	101(23.9%)	81(34.5%)
보통	80(19.0%)	58(24.7%)
약간 찬성	113(26.8%)	28(11.9%)
매우 찬성	41(9.7%)	11(4.7%)
합계	422(100.0%)	235(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고등학교간의 학력격차 추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과거보다 약간씩 학력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25.5%인데 비해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응답은 무려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의 농촌교육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4-15> 농촌 학교와 도시지역 학교 간의 학력격차에 관한 인식
(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매우 개선되고 있다	4(1.7%)
약간씩 개선되고 있다	57(23.8%)
별 변화가 없다	60(25.0%)
약간 심화되고 있다	51(21.3%)
매우 심화되고 있다	68(28.3%)
합계	240(100.0%)

3. 농촌교육 개선과제

농촌지역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선사항을 농업인들과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두에게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 농업인은 학자금 지원(42.8%)과 우수교원 배치(20.9%)를 주로 응답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수교원 배치(28.2%)와 농촌학교 교육설비 지원(20.8%)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하고 있다.

<표 4-16> 농촌교육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구분	농업인 응답자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자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76(42.8%)	42(17.1%)
농촌지역 학교 확충	19(4.6%)	17(6.9%)
농촌학교 교육설비 지원	50(12.2%)	51(20.8%)
우수교원 배치	86(20.9%)	69(28.2%)
특기적성교육 다양화	24(5.8%)	25(10.2%)
통학지원(셔틀버스 운행)	37(9.0%)	18(7.3%)
농촌지역 대학특별전형 강화	17(4.1%)	21(8.6%)
기타	2(0.5%)	2(0.8%)
합계	411(100.0%)	245(100.0%)

제 V 장 소득 및 경제활동

본 조사는 500사례가 채 되지 않는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이나 지출액 등의 추계에서는 정확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조사나 추계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가의 경제상황과 관련된 수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다음 <표 5-1>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농림부의 2000년 추계치에 의하면 1999년 기준으로 농가의 평균 소득은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평균 2,232만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계비는 평균 1,71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부채의 규모는 1,853만원 가량이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농가소득 규모는 1996년 이후 제자리 걸음 혹은 오히려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규모는 10% 가량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가부채액은 6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부채의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농촌경제의 피폐성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5-1> 농가소득 및 부채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농가소득	가계비	자산	부채
'96	10,837 (월903)	7,487 (월624)	4,974 (월415)	23,298 (월1,941)	17,093 (월1,420)	168,900	11,734
'97	10,204 (월850)	8,677 (월723)	4,607 (월384)	23,488 (월1,957)	17,045 (월1,420)	184,503	13,012
'98	8,955 (월746)	6,976 (월581)	4,563 (월380)	20,494 (월1,708)	16,422 (월1,370)	192,335	17,011
'99	10,566 (월880)	7,034 (월586)	4,723 (월393)	22,323 (월1,860)	17,123 (월1,426)	154,226	18,535

※ 자료 : 농림부 농림관련주요통계(2000)

1. 소득관련

조사대상 농업인들의 평균 가구소득은 연 1,771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가소득인 연 평균 2,232만원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표 5-2> 연평균 농가소득(농업인 응답)

응답자수	평균(만원)	최소값(만원)	최대값(만원)
424	1770.9906	17	35,000

가구원 중 농업 외의 소득을 가진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35.5%로 나타났고, 농업종사자인 가구원(가구주)이 농업 외에 다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27.8%이었다.

<표 5-3> 농업 외의 직업활동과 소득(농업인 응답)

구분	있다	없다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진 가구원	159(35.5%)	289(64.5%)
농업종사자 가구원이 다른 일을 겸업	124(27.8%)	322(72.2%)

가구소득은 농업종사자 가구원이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관계(.17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와도 상관관계(.318**)가 있어 가구원 수가 많으면 농가소득이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노인만으로 구성된 소수 가구원을 가진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취약한 것과는 관련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가구원 수가 많으면 기본적인 지출액수도 커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삶의 질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 5-4> 가구소득과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표

구분	지출액	부채액	가구원수	가주주의 농업외 수입유무
가구소득	.382**	.287**	.318*	.173**

* p < .05 ** p < .01

가구원의 직접적인 근로소득 외에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이전 받고 있는 소득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농업인의 14.7%인 66가구가 이전 받고 있는 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5-5> 정기적으로 이전 받고 있는 소득의 유무(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정기적으로 이전 받는 소득이 있다	66(14.8%)
정기적으로 이전 받는 소득이 없다	378(85.2%)

정기적으로 이전 받고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가구소득을 비교해보면 정기적인 이전이 있는 경우가 가구소득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기적인 이전을 받지 않는 경우는 평균소득이 843만원 가량인데 비해 정기적인 이전을 받지 않는 경우는 평균소득이 1,912만원 가량으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차이는 t-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상황이 열악한 농가가 대개 소득이전의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5-6> 정기적인 이전 소득 유무별 평균소득 비교(농업인 응답)

구분	분석에 투입된 수	평균소득 (만원)	t
정기적인 이전 소득이 있는 경우	57	843.4386	-6.816**
정기적인 이전 소득이 없는 경우	360	1912.4889	

** p < .01

이전 받고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주체는 결혼한 자녀인 경우가 전체의 5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별거하고 있는 미혼자녀, 부모형제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사람(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결혼한 자녀	37(56.1%)
미혼 자녀	15(22.7%)
부모형제	11(16.7%)
친척	1(1.5%)
기타	2(3.0%)
합계	66(100.0%)

이처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소득의 액수는 월 평균 207,081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금액은 연 평균으로 볼 때, 대략 250만원에 해당하므로 정기적인 이전을 받고 있는 농가의 연 평균 소득액인 843만원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8> 이전소득의 크기(농업인 응답)

응답자수	월 평균(원)	최소값(원)	최대값(원)
65	207,081.28	10	2,000,000

2. 지출관련

조사대상 농업인들의 월 평균 가구지출은 112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344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농림부의 가계비 추산액인 연 평균 1,712만원에 비교할 경우 소득에서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소 작은 금액이다.

<표 5-9> 월 평균 가구지출액수(농업인 응답)

응답자수	평균(만원)	최소값(만원)	최대값(만원)
442	111.6674	10	1,200

지출액 규모는 가구소득과 상관관계(.382**)가 있어 소득이 많은 가구가 지출규모도 크며, 가구원 수와도 상관관계(.335**)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0> 지출액과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표

구분	가구소득	부채액	가구원수	가구의 농업외 수입유무
지출액	.382**	.482**	.335*	.226**

* p < .05 ** p < .01

지출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거유지비(33.1%)와 교육비(29.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비(9.6%)와 경조사비(8.3%)가 다음으로 응답되고 있다.

<표 5-11>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내용(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주거유지비	148(33.1%)
교육비	132(29.5%)
의료비	43(9.6%)
이자 상환	20(4.5%)
저축(계돈)	16(3.6%)
피복비	1(0.2%)
식비	9(2.0%)
문화/여가활동비	3(0.7%)
경조사비	37(8.3%)
채무상환	33(7.4%)
기타	5(1.1%)
합계	447(100.0%)

3. 부채관련

부채가 있는 농가는 전체 응답가구의 72.1%인 323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농가의 3/4 가량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5-12> 농가부채 유무(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부채가 있다	323(72.1%)
부채가 없다	124(27.7%)
합계	446(100.0%)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의 부채규모는 가구당 평균 3,600만원 가량으로 나타나 이는 농림부의 1999년 통계치인 평균 1,854만원 보다 훨씬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부채가 없다는 농가를 포함하여 평균부채액을 산정하여도 가구당 평균 2,512만원의 부채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표 5-13> 부채가 있는 농가의 평균부채액수(농업인 응답)

응답자수	평균(만원)	최소값(만원)	최대값(만원)
314	3599.9045	50	35,000

부채 규모는 가구소득과 상관관계(.287**)가 있어 소득이 많은 가구가 역시 부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출액(.482**) 및 가구원 수(.242**)와도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출액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부채의 규모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14> 부채액과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표

구분	가구소득	지출액	가구원수	가구의 농업외 수입유무
부채액수	.287**	.482**	.242*	.057

* p < .05 ** p < .01

부채가구가 주로 부채를 얻어 쓰는 부채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73.8%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금지원에 의한 부채를 주 부채원으로 하고 있었고 22.5%는 은행의 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이나 친지로부터 주로 부채를 얻어쓰는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5> 부채농가의 주 부채원(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정부/공공기관의 자금지원	236(73.8%)
친척/친지	9(2.8%)
은행용자	72(22.5%)
기타	3(0.9%)
합계	320(100.0%)

부채를 지게되는 항목에 대한 질문한 결과 영농자금(42.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사업자금(19.1%)과 주택관련자금(13.6%)이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표 5-16> 부채를 지게된 주 내역(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주택관련자금	44(13.6%)
교육비	28(8.6%)
의료비	8(2.5%)
관혼상제비	3(0.9%)
영농자금	138(42.6%)
일상생활비	19(5.9%)
채무상환	11(3.4%)
사업자금	62(19.1%)
기타	11(3.4%)
합계	324(100.0%)

4.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제여건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나빠졌다는 응답이 40%, 좋아졌다는 응답도 약 40%로 과거와 비슷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5-17> 10년 전과 비교할 때 현재의 생활수준(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매우 나빠졌다	59(13.2%)
조금 나빠졌다	119(26.6%)
그대로이다	85(19.0%)
조금 좋아졌다	141(31.5%)
매우 좋아졌다	43(9.6%)
합계	447(100.0%)

한편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을 질문하였다. 이 경우에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7% 가량으로 나타났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6% 정도로 나타나 조금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약간의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5-18> 현재와 비교할 때 10년 후의 생활수준 전망(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매우 나빠질 것이다	31(7.1%)
조금 나빠질 것이다	88(20.1%)
그대로일 것이다	116(26.5%)
조금 좋아질 것이다	169(38.6%)
매우 좋아질 것이다	34(7.8%)
합계	438(100.0%)

이 응답을 각각 5점 척도의 숫자로 환산하여 계산해 볼 경우에도 역시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생활수준은 평균 2.9776점을 나타내어 과거와 비슷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10년 후의 생활수준에 대한 5점의 질문에서는 평균 3.1986점을 나타내어 현재와 비슷하지만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농업인들이 향후 경제여건에 대해 그다지 비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라 하겠지만 소득과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은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표 5-19>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생활수준(1점-5점) 평균점수
10년 전과 비교할 때, 현재의 경제여건	447	2.9776
현재와 비교할 때, 10년 후의 경제여건	438	3.198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자신의 근무지역 농촌의 소득과 경제여건의 심각성에 대해 5점(1점-전혀 문제가 안됨, 5점-매우 심각한 문제)으로 질문하여 보다 객관적인 응답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에 대해서는 3.9871점, 농촌 지역의 빈부격차는 3.8369점, 도농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는 4.0601점, 농가부채문제는 4.5708점으로 조사되어 농가의 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농가부채문제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5-20> 농가소득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 정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응답)

구분	문제의 심각성 정도 (1점-5점)
농가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음	3.9871
농촌지역의 빈부격차	3.8469
도농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4.0601
농가부채문제	4.5708

제VI장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1. 노후대책과 연금제도

1) 노후대책

어떠한 노후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 농업인들은 43.4%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농업인들의 노후보장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노후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계층에 대한 접근이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인적 저축과 계속 농사일을 하겠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와 연금 제도가 아직은 노후대책의 대안으로 많은 농업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6-1> 준비하고 있는 노후대책(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국민연금	67(14.9%)
개인적 저축	79(17.6%)
자식에게 의존	22(4.9%)
계속 일(농사)을 한다	79(17.6%)
아무 대책이 없다	195(43.4%)
기타	7(1.6%)
합계	449(100.0%)

현재의 노후대책이 충분하다고 느끼는가를 5점(1점-매우 불충분, 5점-매우 충분)으로 질문한 결과를 볼 때, 농업인들은 전체의 80% 이상이 불충분한 상태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응답을 5점 척도로 숫자화 한다면 평균 1.8170으로 매우 낮은 충분성 점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6-2> 현재 노후대책의 충분성(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매우 불충분	200(44.6%)
약간 불충분	161(35.9%)
보통	60(13.4%)
충분한 편	23(5.1%)
매우 충분	4(0.9%)
합계	448(100.0%)

바람직한 노후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개인적 저축을 50.7%의 농업인이 응답한 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17.6%만이 응답하여 연금제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바람직한 노후대책으로 저축을 하거나 계속 농사를 짓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3> 가장 바람직한 노후대책(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국민연금	79(17.6%)
개인적 저축	227(50.7%)
자식에게 의존	14(3.1%)
계속 일(농사)을 한다	126(28.1%)
기타	2(0.4%)
합계	448(100.0%)

2) 농어민연금보험

이처럼 노후대책으로서 연금제도에 의존을 적게 하고 그 중요성을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자신의 관할 지역 농업인들이 연금제도에 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긍정성을 5점(1점 - 매우 부정적, 5점 - 매우 긍정적)으로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약 32%는 노후대책으로서 농어민연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고 32.4%는 보통, 35.6%는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었다.

<표 6-4> 연금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정도(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매우 부정적	10(4.1%)
약간 부정적	67(27.8%)
보통	78(32.4%)
약간 긍정적	76(31.5%)
매우 긍정적	10(4.1%)
합계	248(100.0%)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들은 연금보험료를 월 평균 30,109원 가량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을 주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약간의 부담을 느끼지만 큰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같은 내용을 질문한 응답결과에서는 오히려 다소 더 높은 부담이라는 응답이 나타나고 있었다.

<표 6-5> 연금보험료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 정도(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26(12.7%)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50(24.4%)
보통	36(17.6%)
약간 부담이 된다	64(31.2%)
매우 부담이 된다	29(14.1%)
합계	205(100.0%)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가 농가의 소득과 부채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의 부담을 타 지역의 생활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므로 부담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6> 연금보험료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 정도(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4(1.6%)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13(5.2%)
보통	53(21.4%)
약간 부담이 된다	120(48.4%)
매우 부담이 된다	38(15.3%)
잘 모르겠다	20(8.1%)
합계	248(100.0%)

조사 대상 농가 중 특례노령연금 대상자는 49명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자의 10.9%에 해당하였는데 이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노후대책으로 연금을 지적하는 비율이나, 보험료를 높이고

수급액도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연금제도에 의해 일단 혜택을 받고 나면 제도 전반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나 긍정적 판단이 높아지므로 이들을 활용한 연금제도에 대한 홍보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어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농어촌지역 연금가입자 중 모든 농어민에 대하여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최저등급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보조하고 있다. 이 국가의 보험료 보조에 대해서는 66.1%의 응답 농업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6-7> 농어민연금 보험료 국가보조의 인식(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국가의 보험료 보조를 알고 있다	279(66.1%)
국가의 보험료 보조를 모르고 있다	143(33.9%)
합계	422(100.0%)

반면 이 보조가 한시적인 정책이라서 2004년 이후 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2.7%의 응답 농업인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6-8> 농어민연금 보험료 국가보조의 한시성 인식(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국가의 보험료 보조가 2004년까지 한시적임을 알고 있다	42(12.7%)
국가의 보험료 보조가 2004년까지 한시적임을 모르고 있다	289(87.3%)
합계	331(100.0%)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여 금액에 따라 급여수준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부담-고급여 형태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저부담-저급여 형태를 취할 것인지 하는 점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서 농업인들은 다수인 58.9%의 농업인들이 나중에 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보험료를 적게 냈으면 좋겠다는 저부담-저급여 형태를 선호하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당장의 연금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9>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연금보험의 기여와 급여 원칙(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을 많이 줌	147(33.4%)
보험료를 낮추고 연금도 적게 줌	259(58.9%)
기타	34(7.7%)
합계	440(100.0%)

이에 대해 농촌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반대로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을 많이 주는 고부담-고급여의 고보장 방식에 대해 더 많은 수가 응답하여 농업인들의 표출된 욕구와 전문가의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s)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6-10>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연금보험의 기여와 급여 원칙(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을 많이 줌	116(49.6%)
보험료를 낮추고 연금도 적게 줌	97(41.5%)
기타	21(9.0%)
합계	234(100.0%)

현재 농어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쟁점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신고소득액이 매우 낮다는 점, 국가 보험료 보조의 정액제 문제, 한시적 국고 보조의 문제,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에 대한 저항 등과 무엇보다도 연금보험제도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인식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연금제도의 현황 중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비교적 고른 응답이 나타났으나 가장 다수의 응답은 전체의 39%에게서 나타난 낮은 신고소득액에 대한 대처이었다.

<표 6-11> 농어민연금제도 현황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낮은 신고 소득액에 대한 대처	92(39.0%)
한시적 국고보조의 연장	61(25.8%)
국고보조금 정액지급의 정률제 전환	43(18.2%)
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37(15.7%)
기타	3(1.3%)
합계	236(100.0%)

신고소득액이 낮을 경우 이후 노후소득보장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만이 아니라 연금가입자 전체적으로 연금급여액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연금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며 결국은 농어민연금을 기초연금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험료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와 소득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관행에 의해 신고소득액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 연금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은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표 6-12> 농어촌지역 연금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구분	계	농어촌			도시지역	사업장
		계	농어민	비농업인		
1995	943,468	577,126	583,018	558,395	-	1,052,602
1996	1,066,500	565,759	577,233	539,152	-	1,214,873
1997	1,216,825	592,168	605,663	570,238	-	1,395,998
1998	1,271,736	635,310	639,111	630,475	-	1,479,490
1999	1,130,251	659,371	645,834		956,490	1,386,138
2000	1,194,998	698,308	652,000		973,480	1,500,812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2000)

물론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에 의해 도시지역보다 소득액 자체가 작을 수도 있으나 농림부 통계에 의하면 1999년 기준으로 다음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신고소득과 농림부가 파악한 농가소득액 간에 약 3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상 이에선 정부 보험료 보조의 정책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신고소득액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처하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6-13> 국민연금신고소득과 농림부 파악 농가소득비교

구분	국민연금신고소득수준(1)	농가소득(농림부)(2)	(1)/(2)
1996년	577,233	1,941,500	29.73 %
1997년	650,663	1,957,333	33.24 %
1998년	639,111	1,707,833	37.42 %
1999년	645,834	1,860,250	34.72 %
2000년	652,000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1997년 9월 7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구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재산과 부양자가 취약하고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대상자에게 생계급여와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제도이다.

이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으면서 동시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에 미달할 경우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의 경우 노령자가 많아 빈농인 노령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의 측면에서는 수급권자 선정에 적절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대부분 타지에 살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등이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액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수급권자가 되려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이 중 첫째로 소득기준은 이는 소득평가액이 해당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삼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가의 여부이다.

<표 6-14>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소득평가액 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평가액 (월)	33만원 이하	56만원 이하	76만원 이하	96만원 이하	109만원 이하	123만원 이하

다음으로 재산기준은 금액기준,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승용차기준 등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데 이 중 농촌과 관련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토지가격 산정에서 환산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 대한 부분으로 이는 경우에 따라 부적절한 수급권자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한편 승용차의 경우도 최근 농가에 서의 승용차 보유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농촌지역 대중교통망 취약성과의 연관성 속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농업인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농업인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보호를 신청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11.4%인 51가구가 신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신청 경험(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신청 경험이 있다	51(11.4%)
신청 경험이 없다	398(88.6%)
합계	449(100.0%)

신청 후 수급권자 선정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는 25가구에 대해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재산액수가 많아서라는 이유가 7가구로 다수로 나타났으나 이는 사례수가 부족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4사례, 담당 공무원의 판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야기하는 사례도 5사례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6-16> 수급권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유(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소득액수가 기준을 넘어서	3(12.0%)
재산액수가 기준을 넘어서	7(28.0%)
법적인 부양자가 있어서	5(20.0%)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5(20.0%)
이유를 모른다	4(16.0%)
기타	1(4.0%)
합계	25(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가 전체 응답의 60.3%로 도움이 필요가 없다는 응답 29.9%를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3%에 그쳤고, 신청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1.5%, 신청에 대해 몰라서 시기를 놓친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가는 담당 직원(전담공무원)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6-17> 수급권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도움이 필요 없어서	118(29.9%)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17(4.3%)
그런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12(3.0%)
신청방법을 몰라서	6(1.5%)
자격기준이 안 되어서	238(60.3%)
신청시기를 놓쳐서	0(0.0%)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창피해서	4(1.0%)
기타	0(0.0%)
합계	395(100.0%)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업무 주 담당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제도의 여러 측면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 수급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과거보다 수급자 수가 늘어났다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넘고 있어 다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6-18>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실시 이후 수급자 수 변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매우 줄어들었다	10(4.0%)
약간 줄어들었다	41(16.6%)
별 변화가 없다	46(18.6%)
약간 늘어났다	118(47.8%)
매우 늘어났다	32(13.0%)
합계	247(100.0%)

급여수준에 대해서도 전담공무원은 80% 이상이 과거보다 급여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응답하고 있어 과거보다 오히려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는 일단 일부의 사례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6-19>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실시 이후 급여수준 변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매우 낮아졌다	6(2.4%)
약간 낮아졌다	14(5.7%)
별 변화가 없다	24(9.7%)
약간 높아졌다	160(65.3%)
매우 높아졌다	41(16.7%)
합계	245(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의 농가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빈곤농가를 전체 농가의 14.88%로 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로 보호를 신청한 농가는 전체 농가의 평균 13.84%로 나타났으며 보호를 신청한 농가 중 수급자로 선정이 된 농가는 평균 76.50%인 것으로 전담공무원에 의해 응답되었다.

<표 6-20>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식

구분	응답자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전체 농가대비 보호가 필요한 농가 비율(%)	242	14.88	0.60	80.00
전체 농가 대비 실제 보호신청 농가 비율(%)	240	13.84	0.10	86.00
보호신청 농가 대비 선정 농가 비율(%)	244	76.50	2.00	100.00

이 결과를 조사대상 농업인들의 응답에서와 비교할 때, 생활보호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응답한 전체 가구 중 11.4%인 51가구로 나타났던 점에 비추어 보면 대략 유사한 수치로 볼 수 있다.

신청을 했는데도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은 주된 이유가 부양자 기준(73.7%)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농업

인들의 응답 결과와 다소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 응답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21> 급여신청을 했는데도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주 이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소득기준	23(9.5%)
재산기준	39(16.0%)
부양자기준	179(73.7%)
기타	2(0.8%)
합계	243(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현재 농촌지역에서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 가량이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이 응답들을 5점 만점(1점-매우 부적절, 5점-매우 적절)의 척도로 수치화하여 계산해 보면 평균 2.5041점의 응답을 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22> 농촌지역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적절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매우 부적절	32(13.2%)
약간 부적절	110(45.5%)
보통	52(21.5%)
적절한 편	42(17.4%)
매우 적절	6(2.5%)
합계	242(100.0%)

4)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사업의 취약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지 물질적 급여 뿐만이 아니라 자활공동체 사업 등의 경제적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 사업이 농촌지역에서는 특히 취약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관할 농촌지역 내에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 사업장이 있다고 응답한 전담 공무원은 응답자의 9.4%에 불과하였다.

<표 6-23> 관할 농촌지역 내에 자활후견기관의 유무(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자활후견기관이 있다	23(9.4%)
자활후견기관이 없다	221(90.6%)
합계	244(100.0%)

또한 관할 지역의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등 자활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자격기준이 되는 농업인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전체 조사지역의 9.5%에서만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자활공동체 사업이 결여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24> 관할 농촌지역 내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유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있다	23(9.5%)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없다	218(90.5%)
합계	241(100.0%)

이러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사업의 취약성은 2001년 3월 현재 공식적인 자활후견기관 70개소 중 읍면지역에 위치한 자활후견기관은 강원도 정선, 충북의 진천, 전북의 김제, 전남의 해남 등 4개소 뿐인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과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자 기준에 대한 개선(47.8%)을 들고 있다. 이는 역시 일선 현장의 제도 운영에서 고령의 빈곤 농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원거리 지역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적용이 난점과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표 6-25> 농촌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수급자격에서 토지가격산정의 문제	20(8.5%)
수급자격에서 부양자 기준의 문제	112(47.7%)
농촌지역에 대한 특례규정의 마련	68(28.9%)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프로그램의 확충	30(12.8%)
기타	5(2.1%)
합계	235(100.0%)

3. 사회복지서비스

1) 농촌관련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

농촌지역과 긴밀하게 관련성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인 공공근로알선, 자활공동체 사업, 농업노동재해보험, 재가복지서비스, 농가도우미제도에 관해 알고 있는가를 농업인들에게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대부분(94.8%)의 농업인이 알고 있었으나 다른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6-26>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정도(농업인 응답)

사회복지서비스 구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근로활동 알선사업	420(94.8%)	23(5.2%)
자활공동체 사업	167(38.2%)	270(61.8%)
농업노동재해보험	221(50.3%)	218(49.7%)
재가복지서비스	141(32.5%)	293(67.5%)
농가도우미제도	190(43.8%)	244(56.2%)

이들 서비스에 적용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농업노동재해보험이 응답자 중 16.8%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서비스는 극히 일부의 적용만을 보이고 있어 매우 적은 비율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6-27>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적용정도(농업인 응답)

사회복지서비스 구분	해당	비해당
공공근로활동 알선사업	18(4.6%)	371(95.4%)
자활공동체 사업	3(0.8%)	386(99.2%)
농업노동재해보험	66(16.8%)	328(83.2%)
재가복지서비스	5(1.3%)	383(98.7%)
농가도우미제도	40(10.3%)	350(89.7%)

2)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를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소수의 농업인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6-28>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인지정도(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알고 있다	60(13.4%)
모르고 있다	388(86.6%)
합계	448(100.0%)

그러나 이 결과는 단지 농업인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촌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활동중인 사회복지사의 절대수가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조사결과 관할 읍면지역 내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수는 0.48개소 가량으로 나타났고 활동중인 사회복지사의 수도 평균 2.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9> 사회복지시설과 활동중인 사회복지사의 수(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관할 읍·면 내 사회복지시설의 수	234	0.4829	0	8
관할 읍·면 내 활동중인 사회복지사의 수	240	2.4304	0	20

이러한 수치는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것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복지

지시설과 인력의 추가 투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농업인들의 이용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s)를 확인하는 것이 대안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10가지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충분성 정도를 각 5점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질문하였다.

여기서 필요성과 충분성은 각각 1점은 전혀 필요(충분)하지 않다고 5점이 매우 필요(충분)하다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과 충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지수는 결과를 보기 쉽도록 조작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필요성 점수에서 충분성 점수를 뺀 값으로 이 값이 높다는 것은 관할지역 농촌에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결국 그 필요성이 높게 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6-30> 관할지역내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의 필요성 및 충분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필요성 점수	충분성 점수	필요지수
종합사회복지관	3.7082	1.4923	2.21
장애인복지시설	3.7511	1.5584	2.19
아동복지시설	3.2965	1.7626	1.55
여성복지시설	3.2620	1.6103	1.64
노인복지시설	4.0380	2.0049	2.04
아동보육시설(어린이집)	3.7922	2.7696	1.08
정신건강서비스	3.7922	1.5204	2.27
재가복지서비스	4.0596	1.7250	2.31
가족상담	3.7368	1.6010	2.12
자원봉사관리조정	3.6622	1.6458	2.01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이 필요성은 높은 반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영역별로 두드러지는 판별내용이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가복지서비스와 노인 복지시설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장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정신건강서비스 등이 언급되고 있었다. 필요지수를 살펴보면 재가복지서비스, 정신 건강서비스, 종합사회복지관이 높게 나타나 이의 확충이 긴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관할 지역 농업인들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이용도가 낮다는 응답이 전체의 2/3를 넘고 있다.

<표 6-31> 농업인들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정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이용도가 매우 낮다	89(38.4%)
이용도가 낮은 편이다	66(28.4%)
보통이다	60(25.9%)
이용도가 높은 편이다	8(3.4%)
이용도가 매우 높다	9(3.9%)
합계	232(100.0%)

이처럼 농업인들이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 이용에서 저조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이용의 장애요인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질문하였다. 응답결과 역시 농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조정의 문제보다는 일차적으로 농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서비스를 확충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일 것이다.

<표 6-32> 농업인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장애요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이용할만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없다	178(73.3%)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21(8.6%)
거리가 멀다	28(11.5%)
시간이 맞지 않는다	7(2.9%)
비용부담	7(2.9%)
기타	2(0.8%)
합계	243(100.0%)

3)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농업인의 욕구를 문의하였으나 집에 돌보아야 할 아동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 농가의 14.4%에 해당하는 65사례에 불과하였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 양상을 나타내는 반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중 집에서 주로 아동을 돌보는 가구원이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역시 아동의 모친이 절대 다수인 69.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조부모인 경우가 24.6%로 나타났다.

<표 6-33> 가정 내 주 양육담당자(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아동의 엄마	45(69.2%)
아동의 아빠	1(1.5%)
아동의 조부모	16(24.6%)
친인척	2(3.1%)
기타	1(1.5%)
합계	65(100.0%)

이 중에서 아동을 주로 돌보는 가구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는 단 1사례였고 나머지 다른 가구는 모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총 33사례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의 7.3% 수준이었고 양육해야할 아동이 있는 경우 중에서는 대략 1/2 정도에 해당하였다.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종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육시설 이용자 중 47.4%의 경우에 일반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34.2%의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 응답이었다.

<표 6-34>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종류(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국공립 보육시설	13(34.2%)
일반 민간보육시설	18(47.4%)
직장 보육시설	1(2.6%)
가정 보육시설	3(7.9%)
기타	3(7.9%)
합계	38(100.0%)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보육료는 평균 80,406원으로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한 비용임을 볼 수 있다.

<표 6-35>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평균 보육료(농업인 응답)

응답자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32	80,406원	10,000원	200,000원

현재 아동이 있으면서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점을 질문하였다. 응답결과 2/3 가량은 보육시설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6> 보육시설 이용의사(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이용의사가 있다	21(67.7%)
이용의사가 없다	10(32.3%)
합계	31(100.0%)

아동이 있으면서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경우의 10명에 대해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가족이나 친지가 더 잘 돌볼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보육에 대한 인식경향을 반영하고 있었다.

4) 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학생, 청소년 대상의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욕구를 느끼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대(18.1%)와 학습지도(17.8%)가 다수의 응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7> 가장 필요한 학생·청소년 대상의 사회복지서비스(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학습지도	79(17.8%)
비행문제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10(2.3%)
유해환경정비	8(1.8%)
비행청소년에 대한 계도활동 강화	8(1.8%)
문화공간의 확대	80(18.1%)
학생, 청소년이 없다	258(58.2%)
합계	443(100.0%)

돌보아야 할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있으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별적 욕구가 매우 커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히 돌보아야 할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전체 응답 농업인의 14.5%인 65가구가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8>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돌보아야 할 가구원 유무(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돌보아야 할 가구원이 있다	65(14.5%)
돌보아야 할 가구원이 없다	383(85.5%)
합계	448(100.0%)

이들 가구원에 대한 부양을 누가 하는지 물은 결과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53.4%)가 가장 다수를 나타내어 농촌가구에서 원조가 필요한 가구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심각한 문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누군가가 부양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 가구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압도적인 다수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표 6-39> 돌보아야 할 가구원에 대한 부양자(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돌보는 사람이 없다	63(53.4%)
여성가구원	50(42.4%)
남성가구원	1(0.8%)
친척	2(1.7%)
고용한 사람	1(0.8%)
기타	1(0.8%)
합계	118(100.0%)

이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구원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단 1가

구에 불과하며 대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경향과도 관련이 되며, 방문보건사업이나 재가복지봉사활동,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기획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Ⅶ장 정보화·문화 및 기타

1. 정보화 실태 및 욕구

1) 컴퓨터의 활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 농가의 40.2%(총 445가구 중 179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의 조사결과 나타난 읍·면 지역 컴퓨터 보급률 평균인 58.4%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한국 전산원의 정보화 지수통계에서도 농촌지역에 대해 약 50%를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 자신의 관할지역 농가의 컴퓨터 보급률이 정보문화센터의 수치인 58.4% 보급률과 비교하여 어떠한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4% 가량(훨씬 더 낮다가 44.5%, 약간 더 낮다가 29.4%로 응답)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7-1> 농가의 컴퓨터 보유 여부(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179(40.2%)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266(59.8%)
합계	445(100.0%)

컴퓨터 보유 자체보다는 이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가 정보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컴퓨터의 기종이 수시로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낡은 기종의 컴퓨터는 수 년 이내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

라 컴퓨터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 컴퓨터를 얼마나 자주 활용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 컴퓨터 보유농가의 약 69.1%가 컴퓨터를 거의 매일 활용하고 있고 23.6%는 1주일에 2-3회씩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활용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7-2> 컴퓨터 보유 농가의 컴퓨터 활용정도(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거의 매일	123(69.1%)
1주일에 2-3회	42(23.6%)
1개월에 2-3회	5(2.8%)
거의 사용 안 함	8(4.5%)
합계	178(100.0%)

컴퓨터를 주로 활용하는 가구원이 누군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역시 주 사용자는 가구원의 자녀들인 경우가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가구주인 경우가 10.7%가량으로 나타났다.

<표 7-3> 컴퓨터를 주로 활용하는 사람(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가구주	19(10.7%)
가구주의 배우자	11(6.2%)
가구주의 자녀	144(80.9%)
기타 가구원	5(1.1%)
합계	178(100.0%)

컴퓨터를 활용하는 주된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자녀가 주 활용자인 경우에서 나타난 바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오락용이나 자녀 학습용도인 경우가 많았

다. 영농관련 등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컴퓨터를 주로 활용하는 경우는 5% 선에 머물러 매우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7-4> 컴퓨터를 활용하는 주된 용도(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영농관련 등 필요한 정보수집	9(5.1%)
학습 및 교육	59(33.1%)
오락	66(37.1%)
전자우편 등 인터넷	33(18.5%)
기타	3(1.7%)
잘 모름	8(4.5%)
합계	178(100.0%)

2) 인터넷의 활용

평소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농가는 조사대상 농가의 19.2%로 나타나고 있다.

<표 7-5> 농가의 인터넷 활용(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평소 인터넷을 사용한다	86(19.2%)
평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363(80.8%)
합계	449(100.0%)

평소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농가 가구원들에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장소가 주로 어디인지를 질문한 결과 자신의 집(77.7%)이 가장 많은 응답이었고 인근 회원조합이나 농업관련 기관 혹은 학교, 관공서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모두 합해도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6> 인터넷 사용자 중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자신의 집	94(77.7%)
인근 회원조합	1(0.8%)
지도소 등 농업관련 기관	1(0.8%)
관공서 및 공공기관	3(2.5%)
인근 학교	5(4.1%)
기타	17(14.0%)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은 전화모뎀이 75.5%, 상업용 초고속통신망이 24.5%로 나타나고 있다. 약 3/4의 농가가 전화모뎀 방식에 의존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관할 지역 농촌에 초고속통신망이 보급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는 약 38.5%의 농촌지역에 초고속통신망이 보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는 그 용량이 크고 많은 경우에 활용 프로그램이 고도화, 대용량화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보 이용을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대개 전화모뎀은 56k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초고속 통신망과는 10배 이상의 속도 차이임) 적절한 인터넷 정보이용에는 한계가 크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의 확대보급이 기초적인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통신비용은 월 평균 39,450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시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의 농업인들이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인터넷 등 정보화 체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 가량이 별로 정보화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을 나타내어 인터넷 활용도가 낮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5점 척도로 계산한다면 약 2.1736으로 낮은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7-7> 정보수집을 위해 농업인들이 인터넷에 의존하는 정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다	51(20.6%)
별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	134(54.3%)
그저 그렇다	24(9.7%)
약간 의존하고 있다	30(12.1%)
매우 의존하고 있다	3(1.2%)
잘 모르겠다	5(2.0%)
합계	247(100.0%)

3) 정보화 교육

농촌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정보 이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농업인들도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컴퓨터 활용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0%인 224가구에서 나타났다. 특히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욕구는 응답자의 연령(-.560**), 응답자의 학력(.429**), 가구소득액(.204**)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젊은 층의 영농인, 고학력의 영농인, 소득이 높은 농가일 수록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욕구를 더 나타내고 있다.

<표 7-8> 농가의 정보화 교육 욕구(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정보화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	224(50.0%)
정보화 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다	224(50.0%)
합계	448(100.0%)

<표 7-9> 정보화 교육 욕구와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표

구분	연령	학력	가구소득
정보화 교육 욕구	-.560**	.429**	.204*

* p < .05 ** p < .01

그리고, 전자상거래나 영농정보 등 영농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 농가의 44.9%인 202가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서도 응답자의 연령(-.488**), 학력(.395**), 가구소득액(.232**)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나고 있다. 젊은 층의 영농인, 고학력의 영농인, 가구소득액이 높은 영농인에게서 영농을 위한 정보화 체계의 활용욕구가 더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7-10> 농가의 영농을 위한 컴퓨터 활용 의사(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영농에 컴퓨터를 활용하겠다	202(44.9%)
영농에 컴퓨터를 활용할 의사가 없다	248(55.1%)
합계	450(100.0%)

<표 7-11> 컴퓨터 영농 활용 의사와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표

구분	연령	학력	가구소득
컴퓨터 영농 활용 의사	-.488**	.395**	.232*

* p < .05 ** p < .01

영농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겠다는 응답과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욕구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X^2 = 270.071^{**}$)는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에 영농에 컴퓨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12> 정보화 교육 욕구와 영농 활용 의사 응답(농업인 응답)

구분		컴퓨터 영농 활용 의사		합계	X^2
		영농에 컴퓨터를 활용하겠다	영농에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겠다		
정보화 교육	교육을 받겠다	187(41.7%)	37(8.3%)	224(50.0%)	270.071**
	교육을 받지 않겠다	14(3.1%)	210(46.9%)	224(50.0%)	
합계		201(44.9%)	247(55.1%)	448(100.0%)	

** p < .01

그러나 학생이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가구원이 정보화 교육을 받은 1회라도 받아 본 경험은 전체의 10%인 44가구에 불과하여 정보화 교육 참여의사가 50%에서 나타났던 점에 비교한다면 농촌 정보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7-13> 학생교육을 제외한 농가의 정보화 교육 경험(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가구원이 정보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44(10.0%)
가구원이 정보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396(90.0%)
합계	440(100.0%)

교육 경험자들에게 정보화 교육은 어디서 주관한 것에 참여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행정관공서에서 실시한 경우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표 7-14> 정보화 교육의 주체(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농촌지도소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	7(15.9%)
정보통신	7(15.9%)
기타의 행정관공서	11(25.0%)
학교 등 교육기관	13(29.5%)
영리단체	3(6.8%)
기타	3(6.8%)

한편 여러 공공기관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관할 지역 농업인들의 정보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는 젊은 층의 영농인에게는 기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영농과 관련된 농업인들의 정보화에는 큰 기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5> 공공기관 농업인정보화 교육이 농업인 정보화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농업인들의 정보화 체계 접근에 기여하고 있다	13(5.3%)
일부 젊은 영농인들에게는 기여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별 기여가 없다	115(46.6%)
학생의 인터넷 사용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영농관련 기여는 없다	78(31.6%)
전혀 농업인들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5(14.2%)
잘 모르겠다	6(2.4%)
응답자 합계	247(100.0%)

그러나 일단 정보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가 보다 많았고 이는 X^2 검증 결과 25.872**로 의미있는 차이인 것을 볼 수 있다.

<표 7-16> 정보화 교육 경험과 정보화 교육 욕구 응답(농업인 응답)

구분		정보화 교육 욕구		합계	합계
		교육을 받고 싶다	교육을 받지 않겠다		
정보화 교육 경험	있다	38(8.7%)	6(1.4%)	44(10.0%)	25.872**
	없다	181(41.3%)	213(48.6%)	394(90.0%)	
합계		219(50.0%)	219(50.0%)	438(100.0%)	

** p < .01

4) 정보화 관련 과제

<표 7-17> 농업인의 정보화 체계 접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수(%)
PC보급 자금지원	39(15.8%)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 보급	39(15.8%)
난립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의 체계화	50(20.2%)
면 단위 지역 가정방문 정보화 교육	48(19.4%)
영농관련 정보화 체계의 홍보	67(27.1%)
기타	4(1.6%)
합계	247(100.0%)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현지 농촌의 정보화 체계 접근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한 결과 영농관련 정보화 체계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어 영농과 관련된 정보화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문화생활 관련 실태 및 욕구

1) 문화시설

농업인들에게 거주 읍·면 지역 내에 있어서 위치를 알고 있는 문화시설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로당의 경우는 대부분 위치를 알고 있었고, 군민회관의 경우에도 2/3 가량이 위치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공공도서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부분의 문화시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시설의 홍보부족이라기 보다는 농촌지역 내 문화시설 자체가 절대적으로 결여된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18> 거주지역 내 위치를 알고 있는 문화시설(농업인 응답)

문화시설 종류	거주지역 내 위치를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공공도서관	118(26.2%)	332(73.8%)	450(100.0%)
공연장	63(14.0%)	387(86.0%)	450(100.0%)
박물관/미술관	86(19.1%)	364(80.9%)	450(100.0%)
영화관	51(11.3%)	399(88.7%)	450(100.0%)
청소년 수련시설	114(25.3%)	336(74.7%)	450(100.0%)
경로당	412(91.6%)	38(8.4%)	450(100.0%)
군/구민회관	298(66.2%)	152(33.8%)	450(100.0%)
기타	9(2.0%)	441(98.0%)	450(100.0%)

문화시설들의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1년 간 가구원이 1회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과 군민회관을 제외한다면 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수련시설 등 문화시설에 대해 90% 이상의 농가에서 1년 간 단 1회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9> 가구원의 지난 1년간 문화시설 이용경험(농업인 응답)

문화시설 종류	이용 경험이 있다	이용 경험이 없다	합계
공공도서관	41(9.1%)	409(90.9%)	450(100.0%)
공연장	16(3.6%)	434(96.4%)	450(100.0%)
박물관/미술관	23(5.1%)	427(94.9%)	450(100.0%)
영화관	12(2.7%)	438(97.3%)	450(100.0%)
청소년 수련시설	41(9.1%)	409(90.9)	450(100.0%)
경로당	181(40.2%)	269(59.8%)	450(100.0%)
군/구민회관	137(30.4%)	313(69.6%)	450(100.0%)
기타	6(1.3%)	444(98.7%)	450(100.0%)

<표 7-20> 농업인들의 문화시설 이용 장애요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문화시설이 없다	176(71.5%)
거리가 멀다	30(12.2%)
여가 시간이 없다	29(11.7%)
문화시설들의 홍보부족으로 인지도가 낮다	5(2.0%)
이용시 비용부담	6(2.4%)
합계	246(100.0%)

이와 같이 문화시설 이용이 저조한 점에 대해 문화시설 이용의 저해를 초래하는 접근성의 장애요인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질문하였다. 응답결과 문화시설 자체가 농촌지역에 절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 다수인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문화시설의 홍보부족이나 비용부담의 원인은 각각 2% 안팎의 응답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보다도 일차적으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마련이 절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문화행사

‘마을잔치’는 그 개념의 범주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마을잔치가 농촌지역 문화활동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단 지난 1년 간 마을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잔치가 몇 회나 개최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 평균은 1.6869로 나타나 대략 2회 이하의 낮은 마을잔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7-21> 지난 1년 간 마을잔치 개최회수(농업인 응답)

지난 1년 간 마을잔치 개최회수	응답자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444	0	10	1.6869

최근 정부(문화관광부)에서는 농촌지역을 비롯한 문화시설 낙후지역에 대한 문화사업의 하나로 이동 미술전시, 이동 영화관, 이동 도서관, 순회 음악회 등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중요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2.5%에 해당하는 11명만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2>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지난 1년 간 경험여부(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경험한 적이 있다	11(2.5%)
경험한 적이 없다	434(97.5%)
합계	445(100.0%)

이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응답에서도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관할 지역 농촌에서 개최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8.2%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는 농업인들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부터 문화혜택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7-23>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지난 1년 간 개최여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개최한 적이 있다	20(8.2%)
개최한 적이 없다	224(91.8%)
합계	244(100.0%)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향토문화나 민속문화의 계승보존이나 부활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관광부 등의 지원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표 7-24> 5년 전과 비교한 향토/민속문화의 보존에 대한 인식(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마을의 전통민속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197(44.5%)
별 변화가 없다	126(28.4%)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 전통민속문화가 부활하고 있다	41(9.3%)
잘 모르겠다	78(17.6%)
합계	443(100.0%)

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마을의 향토문화나 민속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전통민속문화 부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10% 이내로 나타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응답에서는 과거에 비해 전통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농업인의 응답보다는 다소 적게 나타났으나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향토/민속문화 보존과 계승 프로그램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표 7-25> 5년 전과 비교한 향토/민속문화의 보존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농촌 마을의 전통민속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94(38.5%)
별 변화가 없다	94(38.5%)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 전통민속문화가 부활하고 있다	18(7.4%)
잘 모르겠다	39(16.0%)
합계	443(100.0%)

최근 농촌지역의 문화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부부처 등에서 앞서 소개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역별 향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이러한 정부부처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관할지역 농업인들의 문화생활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7-26> 정부의 문화프로그램이 농업인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다	78(32.2%)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	74(30.6%)
그저 그렇다	39(16.1%)
약간 기여하고 있다	12(5.0%)
매우 기여하고 있다	2(0.8%)
잘 모르겠다	37(15.3%)
합계	242(100.0%)

응답결과는 60%이상의 응답자가 정부의 문화프로그램이 농업인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5점(1점-전혀 기여가 없다, 5점-매우 기여하고 있다) 척도상의 점수로 볼 때는 평균 2.0146의 낮은 평가 점수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농촌지역 등을 표적으로 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은 전시적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우며 보다 내실있고 집중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나타내고 있다.

3. 기타 생활 일반

1) 이농 현상

오래 전부터 농업인들의 이농은 농촌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농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는 이농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28.1%인 126가구이었다.

<표 7-27> 농촌을 떠날 의사의 여부(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 수(%)
이농의사가 있다	126(28.1%)
이농의사가 없다	323(71.9%)
합계	449(100.0%)

특히 이농의사와 연령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젊은 영농인일수록 이농의사를 높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의 이농의사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응답에서도 젊은 층의 이농 현상은 갈수록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28> 젊은 층 이농현상의 심각성(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답)

구분	응답자 수(%)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4.1%)
젊은 층의 이농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심하지 않다	104(42.3%)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28(52.0%)
잘 모르겠다	4(1.6%)
합계	246(100.0%)

이농의사가 있는 농가에 대해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소득이 낮아서가 32.3%로 다수 응답을 나타내었고, 자녀 교육문제 26.0%가 다

음의 다수 응답이었다.

<표 7-29>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농업인 응답)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응답자 수(%)
소득이 낮아서	41(32.3%)
생활환경이 낙후되어서	24(18.9%)
자녀 교육문제	33(26.0%)
전망이 없어서	24(18.9%)
농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2(1.6%)
기타	3(2.4%)
합계	127(100.0%)

2)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

가족의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경제문제, 가족관계, 아동양육과 교육, 청소년 문제, 노인부양문제, 의료문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5점으로 질문하였다.

<표 7-30> 일상생활의 만족도(농업인 응답)

구분	만족도(1점-5점)의 평균점수
경제문제	2.1094
가족관계	4.0134
아동양육 및 교육	3.2327
청소년 문제	3.8091
노인 부양	3.5086
의료문제	2.7656
여가생활	2.4283

여기서 1점은 매우 불만, 5점은 매우 만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수는 최저 1점, 최고 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응답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관계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경제문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보통수준을 의미하는 3점 미만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영역은 경제문제 외에도 여가생활과 의료문제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농업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문제 해결 외에도 농촌 문화활동 여건의 확충 및 의료문제 개선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사회에 대해 느끼고 있는 점을 영역별로 5점으로 질문하였다. 1점은 전혀 아니다를 의미하고 5점은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동의를 의미한다.

응답결과에서 이웃 간에 서로 일을 돕는 상부상조의 측면과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비교적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여가 및 문화공간과 청소년 공간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었고, 지역경제도 대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웃과의 도움의 측면에서도 경제적 도움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과거 농촌의 상부상조의 전통이 이제는 비경제적인 부분에서만 통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7-3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농업인 응답)

구분	동의정도(1점-5점)의 평균점수
지역경제가 활발하다	2.0509
어려울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3236
이웃 간에 여러 가지 일을 서로 돕는다	3.8744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비교적 좋다	3.5603
청소년 공간이 충분하다	1.4449
여가 및 문화공간이 충분하다	1.3453
이 지역에 대한 주위의 인식이 좋다	3.4718

3) 요구사항

정부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 전체 농가의 33.7%가 농가부채문제의 해결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가장 다수의 응답이었다.

<표 7-32> 정부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도움(농업인 응답)

구분	응답자수(%)
생계비 지원	54(13.0%)
직업 및 기술 훈련	17(4.1%)
취업알선	34(8.2%)
생업자금융자	49(11.8%)
교육비 지원	44(10.6%)
의료비 지원	29(7.0%)
농가부채의 해결	140(33.7%)
농촌 사회복지시설 확충	19(4.6%)
농촌 문화시설 확충	21(5.0%)
기타	9(2.2%)
합계	416(100.0%)

이는 농가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응답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농가부채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의 해결이 역시 가장 선결되어야 할 농촌정책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제Ⅷ장 조사결과의 요약과 종합 제언

1. 조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조사로서 전국의 농업인과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표본조사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12개 면을 추출하여 총 450가구의 농가에 대해 2001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사원이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1년 4월 10일에 500명의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4월 27일까지 설문지를 반송한 248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환경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일반 상수도가 아닌 간이상수도나 자가관정의 상수원에 의존하고 있어 수질 등의 체계적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었다. 난방연료로는 기름, 취사연료로는 LPG가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점차 활용하는 추세인 도시지역에 비해 많은 연료비 부담과 안전관리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의 주택정비사업에 의해 농가주택개량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융자금액의 규모나 이자부담 등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가구의 주택개량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 저소득 혹은 노인 농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쓰레기나 하수의 처리에서 농촌지역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현재 농촌지역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대책들이 별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약병이나 폐비닐과 같은 농업 폐기물, 축산 폐기물이나 폐수 등이 적절히 수거 혹은 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도로나 대중 교통의 여건에서도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의 교통불편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임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가장 큰 욕구사항으로 의료기관 이용의 접근성에 아직도 큰 장애가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이는 민간 의료기관의 도시편향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보건소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공중보건의의 책임성 있는 진료서비스 결여, 보건소의 장비와 시설 부족, 방문보건사업의 형식적 운영 등의 문제가 노출되어 농업인과 복지전담공무원의 지적이 나타나고 있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부중 등 독특한 농촌의 의료욕구에 의해 병의원의 증설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식적 의료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불법의료행위나 의료기 판매 문제도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농촌지역에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담은 매우 크게 인식되고 있어 높은 불만상태를 나타내었다.

셋째, 교육 영역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사교육비로 인한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학비용과 통학여건 등 농촌지역의 교육자원이 점점 취약해져가는 양상에 의한 접근성 결여에서 파생되는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농간 학력격차 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정부의 농촌 교육문제에 대한 대처인 농어촌지역 대학특별전형제도 등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도 기자재 지원, 내용의 다양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넷째, 소득과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소득과 재산규모는 과거보다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농가부채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농가가 주로 영농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지고 있었으며 현재의 경제활동 추세로는 이를 상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농가의 경우 타 지역의 가족들로부터 지원 받는 이전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견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담공무원의 견해에서도 현재 농가부채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이 지적되고 있었다.

다섯째,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에 대한 조사결과 일단 농촌지역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노후대책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으며 국가의 연금제도가 현

재로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 노후대책으로서 적절히 활용할 의사마저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고령인구와 빈곤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국가차원에서 원조하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농촌지역에서 부양자 기준의 적절성 문제가 큰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재산에 대한 기준도 농촌지역의 현실과 괴리된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활보호 급여 이외에 중요한 부분인 자활공동체 사업 등은 농촌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어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서비스 활용도는 그 욕구에 비해 매우 미진하였고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사회복지서비스가 농촌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 서비스의 결핍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원봉사자활용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정보화 영역에서는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농촌지역에 컴퓨터 등이 보급되고는 있었으나 아직 자녀의 학습용도나 오락용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영농에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 정보화 체계 활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보화 교육이나 영농활용에 대한 욕구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 초고속통신망 보급, 영농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등은 정부의 홍보만큼 농촌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화 영역에서는 각종 문화시설의 양적 결핍이 지적되었으며, 농촌지역 문화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지역별 향토축제 등의 정부의 문화 프로그램은 전시적인 성격으로 실제 농업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여전히 젊은 층의 이농 현상은 지속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농촌복지의 전반적 증진을 위해 일차적으로는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농업인이 가장 많았다.

2. 분야별 정책제언

1) 생활환경일반

농촌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과제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식수나 연료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장기적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가의 난방연료와 취사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난방연료로 70% 가량이 기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취사연료로는 LPG가 거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의 난방이 가능한 것에 비교해 본다면 사용의 질이나 안전성은 떨어지면서 비용은 더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정기적인 수질검사나 연료의 안전검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지역 주택정비사업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가장 큰 욕구(needs)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초점을 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가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의 경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농업인의 응답에서 용자금액규모의 확대 등의 욕구도 표출되고 있으나 이는 농가부채문제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쓰레기 처리와 함께 농축산 폐기물들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원재생공사 위탁사업에 대한 강화나 수거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농촌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상당 부분 농가나 작은 마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환경오염이 식수 등을 통해 직접 농업인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중교통수단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응답에서 배차간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이 아직도 가장 큰 교통문제에서의 욕구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은 단지 교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 교육, 문화자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농촌의

생활여건을 감안할 때, 농업인들이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보건 및 의료

첫째, 본 조사에서 농업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응답에 의하면, 농촌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활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의 측면이다. 병의원이 떨어져서 쉽게 이용을 못하는 측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은 병의원을 농촌지역에 많이 설립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부문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대안으로 삼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 공공부문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농업인이 보건소의 필요성과 활동내용에 대해 욕구를 나타내었다.

둘째, 현재의 보건소는 시설이나 인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

셋째, 오지에 있는 지역주민들 혹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농촌에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현 단계에서 매우 필요한 과제가 된다. 농촌지역의 의료욕구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성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이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를 보건소에 확대하여 상주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현실성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결국 보건소의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넷째, 1년에 1번 정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국민의 의료비용 전체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교육

본 조사 결과 농업인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농촌 교육여건은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학교의 특기적성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내용보다는 우선 교육설비와 기자재 확충이 필요하다. 일부 학교의 기자재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적절한 특기적성교육을 수행하기에는 특기교육의 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이를 내실 있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농어촌지역 대학특별전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농어촌지역 대학특별전형제도가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우수학생유치와 학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선 농어촌지역 대학특별전형제도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농촌지역 학교통폐합에 대해서 농업인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강제적인 학교통폐합에 대한 정책은 가능한 실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넷째, 농촌지역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선사항에 대한 농업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응답을 볼 때, 학자금 지원, 우수교원 배치, 농촌학교 교육설비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요구된다.

4) 소득과 경제활동

첫째, 오늘날 우리의 농촌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경제적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5년 전에 비해서 농가소득은 정체 혹은 줄어드는데 반하여, 부채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특히 농가부채가 심각한 문제다. 이번 조사의 농업인 응답에 의하면, 전체 농가의 72.1%가 부채를 갖고 있고,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농가소득보다 큰 3,600만원에 이른다. 그래서 농촌지역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일각에서 거론되는 '부채탕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실적인 방안으로서는 결국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활동할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의 농촌의 농업소득을 높이는 것은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일인당 경작지의 한계 등의 이유로 오늘날의 개방화 시대에서의 경쟁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실질적인 방안은 농촌가구의 농업 외 소득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조사에 의하면, 농가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이외의 소득이 있는 가구가 30%에 불과하다. 이것의 이유는 농촌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프로그램을 농촌지역에서 크게 확대하거나,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농촌주민들의 지출을 보면, 주거유지비와 교통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유지비가 가장 큰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주택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개량이나 난방비 등에 관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번 조사에 의하면, 농업인 응답자의 약 43%가 노후대책이 없거나, 있어도 약 35%가 개인저축이나 계속 일을 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농촌인구의 고령화현상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농촌주민들의 노후대책을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국가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

첫째, 서구의 복지국가의 경험으로 볼 때, 노인들의 노후대책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국민연금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농촌주민들은 국민연금을 노후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조사결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농가는 약 17%에 불과하였

다. 이것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농업인들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이다.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국민연금을 위한 신고소득액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의 문제다. 현재는 농어민연금에 대하여 2004년 말까지만 국가의 보험료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시적 규정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야 하고, 또한 농촌경제의 어려움에 비추어볼 때 보조수준도 지금보다 높여 보험료의 1/2 은 정부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본 조사에서 농업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응답에 의하면, 우리의 농촌경제의 피폐성에 비추어볼 때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신청한 사람들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응답에서 나타났듯이 약 60%가 자격기준이 안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농촌지역에서 자격기준의 문제는 특히 재산액수와 부양의무자 규정이 중요하다. 농촌지역은 그 특성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많아서, 실질적인 경제수준(소비능력)은 낮는데, 재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현상이 많은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가에 대해서 재산기준을 제외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농촌지역의 재산액수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양의무자 규정이다. 우리의 농촌지역에는 많은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많은 경우 타지에 살고 있는 자식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정에서는 단지 법률상 부양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을 주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은 서구의 복지국가처럼, 부양의무자 규정을 없애든지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수준의 조건을 크게 완화하여야 한다.

셋째, 농업인의 응답에 의하면 농업노동재해보험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도가 매우 낮은 것은 큰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심각한 왜곡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응답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용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서

비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사회복지시설(특히 노인복지시설)의 양을 늘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즉, 사회복지관련 인력들의 질과 양도 늘려야 한다.

넷째, 유의해야 할 사항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돌보아야 할 가구원이 있는 농가 가운데 약 53%가 아무도 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농촌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또한 재가복지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6) 정보화 문화 및 기타

첫째,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의 확대보급이 기초적인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화 교육이 되려면 농촌지역 주민들 가운데 선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젊은 층의 영농인, 고학력의 영농인, 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욕구를 더 나타내고 있으며, 영농을 위한 정보화 체계의 활용욕구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일단 정보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가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 조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정보화 교육을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젊은 층의 영농인, 고학력의 영농인, 소득이 높은 농가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지 농촌의 정보화 체계 접근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한 결과 영농관련 정보화 체계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영농과 관련된 정보화 교육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문화생활과 관련하여 조사된 결과를 보면, 경로당과 군민회관을 제외한다면 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수련시설 등 문화시설에 대해 90% 이상의 농가에서 1년 간 단 1회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문화시설의 홍보부족이나 비용부담의 원인은 각각 2% 안팎의 응답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보다도 일차적으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마련이 절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정부(문화관

광부)에서는 농촌지역을 비롯한 문화시설 낙후지역에 대한 문화사업의 하나로 이동 미술전시, 이동 영화관, 이동 도서관, 순회 음악회 등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중요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자는 응답자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홍보의 효과가 극히 적다고 하겠다.

따라서 홍보와 함께 정부의 농촌지역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전시적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닌, 보다 내실있고 주민이 주체가 되고 정부는 지원하는 유형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농촌지역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공개적인 전국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전문가가 제대로 평가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이농의사와 연령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젊은 층의 이농의사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농이유를 보면 소득이 낮아서(32.3%), 자녀 교육 문제(26.0%)가 다수 응답인 것으로 보아 농가소득보장과 자녀교육문제 해결이 이농을 막는 관건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조사결과에서 이웃간에 서로 일을 돕는 상부상조의 측면과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비교적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이웃과의 도움과 관련하여 경제적 도움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과거 농촌의 경제적, 비경제적 모두를 포함한 상부상조의 전통이 이제는 비경제적인 부분에서만 통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부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도움으로 전체 농가의 33.7%가 농가부채문제의 해결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음은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소득보장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종합적인 정책제언

오늘날 우리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매우 심각함은 누구나 주지하는 바이다. 농업과 비농업 부문간의 심화되는 소득격차 문제, 농가 소득원의 퇴조현상, 청장년층의 이농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의 문제는 농가부채를 가중시켰고 농촌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 문화 등의 각종 기회에서도 도시와 비교하여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농에 의한 다수의 도시빈민 창출은 사회복지의 우선순위를 이들에게 두게 함으로써 대도시 성장을 유도하였고 결과적으로 농촌사회를 상대적으로 피폐케 하였던 것이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WTO 체제에 의한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압력을 받으면서 농촌사회는 더욱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농촌지역 주민의 상대적 빈부격차와 국민 계층간의 생활격차를 줄이며 농촌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생산과 가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생산수단이나 경쟁능력이 약한 농촌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게 급선무이다. 이 경우 사회보장제도는 아주 효과적인 정책으로 쓰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간접적인 소득증대효과도 가지게 되므로 농촌 주민의 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며 근원적으로 이농을 막는 힘이 될 수도 있다.

농촌복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은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증대 중심의 경제정책적 성격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우선 경제정책적 성격은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대다수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산품의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농촌 주민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에 는 농업 구조조정과 영농방법의 개선, 농산품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에 대한 개입, 농업외 소득원 개발, 농업 육성보호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성격은 새로운 소득원의 창출보다는 소득이전이나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소득상실이나 감소의 위험에 대처하고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시키려는 것으로 이에 는 앞에서 기술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따라서 농촌복지를 위한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적 과제는 소득보장을 기본으로 하

면서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을 견실히 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농촌 주민들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이 우선 필요로 하는 이유로서 첫째, 사회보장제도 확립이 농업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며, 둘째, 산업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기 때문이며, 셋째, 농촌지역의 노후생활 준비와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며, 넷째, 농업과 타부문과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며, 다섯째, 농촌이 식량 안보를 위한 산업기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식량생산지인 동시에 삶의 선택적 장소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조속한 도입은 불가결하기 때문이며, 여섯째, 농업의 현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농약 중독, 질병, 사고 등의 농업관련재해는 상공업부문 종사자의 산업재해와 같은 것으로 이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임을 들 수 있다. 복지는 기본적인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 위주의 생산적 패러다임이 절대적이었다면 이제부터 분배적 패러다임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과감한 농촌복지정책의 실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분배적 패러다임의 도입과 직결된 복지를 위한 나눔의 장치 구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장치구축을 위한 정책수단들에 부여된 적절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하는 정책환경의 조성이 우선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환경적 요구는 정책영역이나 특정한 정책수단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인 삶의 질 설정에 비교적 공통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환경적 요구는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농촌에서 점차 가족을 통한 민간부문 중심 복지공급체계가 약화되고 붕괴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6대 영역에서의 국민복지기본선을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고, 보장하는 국가 사회복지제도의 일대 개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아직 자유시장경제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중단, 노령, 질병, 산업재해, 상병, 유족문제 등 각종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책임의 복지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농촌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복지정책을 새로이 정비하는 대개혁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복지를 총괄하는 기구를 대통령 산하나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 범국가

적 차원에서 '농촌복지정책 발전계획'을 단기, 중장기별로 수립하게 하여, 각 부처간의 농촌발전과 복지와 관련된 여러 정책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통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둘째, 정부지출 농촌복지예산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누진적 과세체계를 만들며, 또한 불로소득 및 공급탄력성이 적은 부동산, 골동품, 귀금속 등의 부와 비생필품 소비에 대한 복지세의 신설 등의 과감한 세제개혁에 의한 적절한 복지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게 한다.

셋째,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농민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구조를 확립한다. 이는 농촌복지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주체는 농촌 주민들 자신이 되어야 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정책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농촌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서 농업인들의 참여가 배제된 복지정책은 그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농촌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의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한 지역별 '농촌빈곤선'을 설정한다. 그리하여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6대 영역에서의 국민복지기본선 개념에 입각한 '농촌복지기본선'을 확립하여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6대 영역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다섯째, 건강보장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의료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에 이동식 '순회 건강진료소'를 만들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농촌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까지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되, 젊은 층의 영농인과 학생들부터 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가능한 학교통폐합은 지양해야 하며, 각 농촌지역 마다 1군데씩 우수 중·고등학교를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도시학교에의 진학을 막도록 하며, 오히려 도시에서 오도록 하는 농촌 교육지원정책을 편다. 이르기 위해서는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가능한 한 4대 사회보험을 농민들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농업노동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을 높여 나가며, 농촌 실업문제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부문은 점차 적용해 나간다.

여덟째,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와 인권보장적 차원에

서의 사회복지시설 문제를 개선한다. 특히 현재 각 지역에 있는 군민회관이나 읍, 면사무소를 잘 활용하여 노인복지, 여성복지를 담당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하게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전문가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농촌의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한다.

아홉째, 농촌 주민들의 요구와 특성의 파악,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지방의 재정자립도 기반 조성, 전문성의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 전체적인 농촌복지 행정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농촌진흥청 산하의 9개 농업기술원 및 7개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157개 기초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를 잘 활용하여 농업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생활개선, 농업인 조직체 육성, 농업인 교육, 농촌사회개발지도 등 농촌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농촌지역의 풀뿌리 복지문제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농업기술원을 '농업개발원'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개발센터'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한다.

<참고문헌>

- 김성순(2000).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방안*. 국정감사정책제안서.
- 김성이·채구묵(1997). *육구조사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김용익(2000). “농어촌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농민과사회*. 통권24호. pp.24-35.
- 김재철(1994). “농촌지역 개발의 문제점과 새로운 개발방향의 모색”. *전남발전*. 1994. 9. pp.84-95.
- 남세진·조홍식(1994). “도시·농촌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과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24호. pp.59-88.
- 농림부(2000). *농림업 주요통계*.
- 박대식·김정호(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2000).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석현(1995).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재관 외(2000).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1999).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1999).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개요*.
- 이동필 외(1995). *농촌지역 2·3차 산업의 활성화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호 외(1999).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길잡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출판부.
- 이현주 외(1999). *저소득층 보건복지욕구 기초조사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1994). *한국농촌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 장영희 외(1997).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명채·박대식(1999).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허장(1998). *농작물 보험 및 재해지원제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 외(1999). *농어촌 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 외(2000). *국민건강보험의 농어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 외(2000). *공공보건의료기관 투자사업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홍식(1993). “농촌빈곤가족의 사회적 욕구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제
3집. pp.185-213.
- 조홍식(1998).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정책”. *아태평화재단. 평화논총*, 2권.
pp.299-324.
- 조홍식(1999). *실업대책 사각지대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실업운동국민운동
위원회.
- 조홍식(2000). “국내 농어촌·농어민 복지문제 보험이나 보장이냐”. 한국농어촌사회
연구소. *농민과사회*, 24호. pp.12-23.
- 최경환 외(2000). *초등학교 교과서 농업관련 내용 개정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양부·이동필(1984). *농공지구 개발의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보건복지포럼*, 2000. 9.
- Bradshaw, J.(1972). "The Concepts of Social Need", *New Society*, 19(March).
640-643.
- Germain, C. B.(1984). *Social Work Practice in Health Care*, NY; The Free
Press.

- Gilbert, N. & Terrell, P.(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4th ed. NJ;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Mckillip, J.(1987). *Need Analysis: Tools for the Human Services and Educa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Park, dae-shik(1999). "Welfare Programs for the Rural Elderly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22. pp.41-55.
- Posavac, E. J. & Carey, R. G.(1997). *Programme Evaluation: Methods and Case Studie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ce-Hall.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 조사

(농업인용)

일련 번호	지역

안녕하십니까?

농림부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농촌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와 서비스 이용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문항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내용을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문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내용이 없는 경우 1가지만 골라 응답해 주시고, 문항마다의 지시에 따라 복수의 응답이나 기입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문항의 이해가 곤란하거나 궁금하신 점은 조사원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은 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농촌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조 홍 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남 기 철 연구원 (☎ 02 : 880-6320)

주소					
가구주성명		응답자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조사일시		조사원성명	

9. 정부지원으로 주택의 어느 부분을 개량하였는지 해당하는 곳 모두에 V표시해 주십시오
 ①가옥구조전체() ②목욕실() ③화장실() ④부엌()
 ⑤부속사() ⑥울타리() ⑦기타()
10. 정부지원의 주택개량사업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용자금액이 부족하다 ②용자금 집행이 늦다 ③절차가 번거롭다
 ④이자부담이 크다 ⑤기타()
11. 주택개량을 위해서 정부지원의 용자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①예(☞ 곧장 13번으로) ②아니오(☞ 12번으로)
12. 주택개량을 위한 정부지원 용자제도를 활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특별히 집을 고칠 곳이 없다 ②용자금액이 적다 ③용자금 집행이 늦다
 ④절차가 번거롭다 ⑤이자부담이 크다 ⑥기타()
13. 귀댁의 주택에서 현재 가장 고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①가옥구조전체 ②목욕실 ③화장실 ④부엌 ⑤부속사 ⑥울타리
 ⑦기타()
14. 마을에서 집까지의 도로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차량출입에 전혀 지장이 없음 ②포장은 되어 있으나 폭이 좁아 차량진입 불편
 ③도로 폭은 넓으나 포장되지 않아 차량진입 불편
 ④도로 폭도 좁고 포장도 안되어 있어 차량진입이 불편
 ⑤기타()
15.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오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①하천이나 수로에 방류(특별히 하수처리장에 연결 안됨) ②가정용 정화조 사용
 ③하수처리장 연결 ④기타()
16. 다음 각각의 쓰레기 처리 방법은 어떻습니까?
 1)음식쓰레기 : ①매립 ②소각 ③쓰레기처리봉투에 담아 수거차량이용
 ④일반 봉투에 담아 버림 ⑤동식물사료 ⑥기타()

- 2)재활용품 : ①따로 분리하여 수거차량 이용 ②분리하지 않고 내다 버림 ③판매
④매립 ⑤소각 ⑥기타()
- 3)기타 생활쓰레기 : ①매립 ②소각 ③쓰레기처리봉투에 담아 수거차량이용
④일반 봉투에 담아 버림 ⑤기타()
- 4)폐비닐/농약병 : ①개별적으로 매립 및 소각 ②마을 공동으로 매립 및 소각
③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 ④기타()

17. 대중 교통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배차 간격 ②요금 ③불친절 ④차량의 노후 ⑤기타()

15. 농촌지역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별로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①방문보건사업 강화 ②농촌지역에 일반병원 확충 ③보건소/지소/진료소 확충
- ④응급진료체계정비 ⑤물리치료강화 ⑥한방진료강화 ⑦의료비 지원
- ⑧야간진료체계정비 ⑨보건소에 의료인력 확충 ⑩기타()

III. 조 4

**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치원~대학원에 다니는 가족원이 있을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1. 학교(유치원 포함) 교육비로 지출되는 액수는 1년 평균 얼마입니까?
 (사교육비를 제외한 납입금 등 공식적 교육비 및 참고서 등 학습자료 구입비 포함)
 년 _____ 원

2. 학교교육 외에 속셈학원, 피아노학원 등 각종 학원이나 과외, 학습지 정기 구독 등의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액수는 한달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월 _____ 원

3. 가족 구성원 중에 학원이나 과외를 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학원이나 과외를 이용합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① 학습지 정기구독 - 예: 눈높이 수학 () ② 개인 과외 ()
- ③ 피아노, 미술, 글짓기, 태권도 등 예체능·취미학원 ()
- ④ 단과학원, 속셈학원 등 학교수업 관련학원 ()
- ⑤ 영어회화, 컴퓨터, 디자인 등 기능 강습학원 ()
- ⑥ 기타(_____)
- ⑦ 과외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

4. 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약간 부담된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5. 귀하는 님의 가정형편상 실제로 아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교육시킬 계획입니까?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여아() 남아()

- ① 중학교 ② 인문계고교 ③ 실업계고교
- ④ 전문대 ④ 4년제 대학 ⑥ 대학원 이상

6. 귀하의 가구원 중에 통학이 아닌 유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습니까?

①예(유학장소 : _____ ☞ 7,8번으로) ②아니오(☞ 곧장 9번으로)

7. 유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잡 가까이에 학교가 없어서 ②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 ③특기를 사려주기 위해 특기가 있는 학교로 유학
- ④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실력과 여건이 안 되어 유학
- ⑤기타(_____)

8. 유학에 들어가는 비용(학비, 하숙자취 등 체제비, 교통비, 용돈 등)은 년 평균 얼마입니까?
 (년 _____ 원)

9. 통학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적어주십시오(해당 없으면 적지 마십시오).

** 만약 여러 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⑤기타에 해당되는 방법의 번호를 모두 기록해 주십시오 **

구분	통학시간	통학방법	비용	
유치원		①버스 ②도보 ③셔틀버스 ④철도 ⑤기타(_____)	월	원
초등학교		①버스 ②도보 ③셔틀버스 ④철도 ⑤기타(_____)	월	원
중학교		①버스 ②도보 ③셔틀버스 ④철도 ⑤기타(_____)	월	원
고등학교		①버스 ②도보 ③셔틀버스 ④철도 ⑤기타(_____)	월	원

10. 학교에서 농촌지역 학생을 위해 해주기를 바라는 특기적성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_____)

11. 농어촌 대학특별전형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알고 있다 ②모른다

12. 농어촌 대학특별전형제도에 의한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읍·면 소재 고등학교로 제한되는데 이 제도에 따라 읍·면 소재 고등학교로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13. 농촌지역 학교통폐합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매우 반대

②약간 반대

③보통

④약간 찬성

⑤매우 찬성

14. 농촌지역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별로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 2순위 : (____)

①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②농촌지역 학교확충 ③농촌학교 교육설비 지원

④우수교원배치 ⑤특기적성교육다양화 ⑥통학지원(셔틀버스운영)

⑦농촌지역 대학특별전형제도 강화 ⑧기타()

IV. 소득 및 경제활동

1. 귀하의 가족 중 농업을 주 직업으로 삼고있는 가구원이 농업 이외에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①있다(일의 종류 : _____) ②없다

2. 귀하의 월 평균 지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3. 한달 지출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우선순위별로 2가지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주거비 ②교육비 ③의료비 ④이자 ⑤저축, 계돈 ⑥피복비 ⑦식비
⑧문화/여가 활동비 ⑨경조사비 ⑩채무 상환 ⑪기타(_____)

4. 귀댁은 현재 부채가 있습니까?

①부채가 있다(약 _____ 만원 ☞ 5,6번으로) ②부채가 없다(☞ 곧장 7번으로)

5. 부채는 주로 누구에게서 얻어 쓴 돈입니까?

①정부/공공기관의 자금지원 ②친척/친지 ③은행융자 ④기타(_____)

6. 주로 어디에 쓰기 위해 빚을 지게 되었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주택관련자금 ②교육비 ③의료비 ④관혼상제비 ⑤영농자금 ⑥일상생활비
⑦채무 상환 ⑧영농 및 사업자금 ⑨기타(_____)

7. 귀댁은 귀하의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현금이나 현물이 있습니까?

①있다(☞ 8, 9번으로) ②없다(☞ 곧장 10번으로)

8. 받고 있는 현금이나 현물이 있다면 누구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①결혼한 자녀 ②미혼 자녀 ③부모형제 ④친척
⑤기타(_____)

9. 받고 있는 현금이나 현물은 월 평균 얼마 정도에 해당합니까?

(월 평균 _____ 원)

10.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귀하의 현재 생활수준은 어떻게 변하였다고 보십니까?

- ①매우 나빠졌다 ②조금 나빠졌다 ③그대로이다
④조금 좋아졌다 ⑤매우 좋아졌다

11.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 귀하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합니까?

- ①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조금 나빠질 것이다 ③그대로일 것이다
④조금 좋아질 것이다 ⑤매우 좋아질 것이다

V.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 1번부터 4번까지는 농어민연금제도(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1. 귀댁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어민연금보험료를 얼마 가량 납부하고 있습니까?
(월 _____ 원)
2. 연금보험료 납부액이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①매우 부담 ②약간 부담 ③보통 ④별로 부담이 안 됨 ⑤전혀 부담이 안 됨
3. 연금보험료를 누군가 대납하고 있습니까?
①예(대납자 : _____) ②아니오
4. 귀댁은 특례노령연금 해당자입니까?
①예 ②아니오
5. 현재 농어민연금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보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예(☞ 6번으로) ②아니오(☞ 곧장 7번으로)
6. 현 국가보조가 한시적인 정책으로 2004년 이후에는 보조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7.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도 많이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①보험료를 좀 높이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다
②나중에 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연금보험료를 적게 냈으면 좋겠다
③기타(_____)
8. 귀댁은 주로 어떤 노후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①국민연금 ②개인적 저축 ③자식에게 의존 ④계속 일(농사)을 한다
⑤아무 대책이 없다 ⑥기타(_____)

9. 노후대책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국민연금 ②개인적 저축 ③자식에게 의존 ④계속 일(농사)을 한다
⑤기타(_____)

10. 귀하의 현재 노후대책은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매우 불충분 ②약간 불충분 ③보통 ④충분한 편 ⑤매우 충분함

11. 귀대는 정부의 생활보호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있다(☞ 12번으로) ②없다(☞ 13번으로)

12. 신청을 했는데도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했다면 보호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소득기준을 초과해서 ②재산기준을 초과해서
③법적인 부양자가 있어서(누구? _____)
④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⑤ 이유를 모르겠다
⑥기타(_____)

13. 보호대상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도움이 필요 없어서 ②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③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④신청방법을 몰라서 ⑤자격기준이 안 되어서 ⑥신청시기를 놓쳐서
⑦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창피해서 ⑧기타(_____)

14. 다음 사업들 가운데 현재 알고 계신 것 모두에 V표시해 주십시오

- ①공공근로활동 알선사업() ②자활공동체사업() ③농업노동재해보험()
④재가복지서비스() ⑤농가도우미제도()

15. 다음 사업들 가운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것 모두에 V표시해 주십시오

- ①공공근로활동 알선사업() ②자활공동체사업() ③농업노동재해보험()
④재가복지사업() ⑤농가도우미제도()

16. 인근의 사회복지관이나 상담시설 등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17. 지난 1년 간 다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회수는 몇 회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관 ()회/ 상담소(상담기관) ()회/ 장애인복지관 ()회

기타(종류 : _____, 회수 : ____ 회)

** 다음 18번에서 24번까지는 귀택에 돌보아야 할 아동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18.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 가구원 중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①아이의 엄마 ②아이의 아빠 ③아이의 조부모 ④친인척 ⑤기타

19.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합니까?

①예(월 _____ 만원 정도) ②아니오

20. 아이를 돌보아 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21.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떠한 보육시설입니까?

①국공립보육시설 ②일반 민간보육시설 ③직장보육시설
④가정보육시설 ⑤기타(_____) ⑥잘 모르겠다

22. 월 보육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월 _____ 만원

23.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예(☞ 곧장 25번으로) ②아니오(☞ 24번으로)

24.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내 가족이나 친지가 더 잘 보아줄 것 같아서 ②근처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③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을 것 같아서 ④비용이 비싸서
⑤기타(_____)

④전자우편 등 인터넷 ⑤기타() ⑥잘 모르겠다

7. 귀하는 평소에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8. 인터넷을 활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집 ②인근 회원조합 ③지도소 등 농업관련 기관 ④관공서나 공공기관
⑤인근 학교 ⑥기타()

9. (집에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 접속방식은 무엇입니까?

①전화모뎀 ②상업용 초고속통신망(ADSL이나 CATV) ③위성 인터넷
④기타()

10. (집에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면) 월 평균 컴퓨터 통신에 들어가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_____ 원)

11. 귀댁의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정보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예(☞ 12번으로) ②아니오(☞ 곧장 13번으로)

12. 받았던 정보화 교육은 어디서 실시한 것이었습니까? (_____)

13. 컴퓨터 활용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14. 전자상거래나 영농정보활용 등 영농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15. 지난 1년 간 정부(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동 미술전시, 이동
영화관, 이동 도서관, 순회 음악회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예(내용 : _____) ②아니오

16. 다음 중 귀택의 읍·면 내에 있어서 위치를 알고 있는 문화시설에 모두 V표시해 주십시오

- ①공공도서관() ②공연장() ③박물관/미술관() ④영화관()
 ⑤청소년 수련시설() ⑥경로당() ⑦군·구민회관/복지회관()
 ⑧기타 (_____)

17. 다음 중 귀택 가구원이 지난 1년 간 이용해본 적이 있는 문화시설에 모두 V표시해 주십시오

- ①공공도서관() ②공연장() ③박물관/미술관() ④영화관()
 ⑤청소년 수련시설() ⑥경로당() ⑦군·구민회관/복지회관()
 ⑧기타 (_____)

18. 지난 1년간 귀택 마을에서는 마을잔치가 몇 회가량 열렸습니까? (약 _____ 회)

19. 지난 5년 간 귀택의 마을과 관련된 향토/민속문화 계승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마을의 전통민속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②별 변화가 없다
 ③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전통민속문화가 부활하고 있다 ④잘 모르겠다

20. 귀하가 이 지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점을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					
지역경제가 활발하다											
어려울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웃 간에 여러 가지 일을 서로 돕는다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비교적 좋다											
청소년 공간이 충분하다											
여가 및 문화공간이 충분하다											
이 지역에 대한 주위의 인식이 좋다											

21. 귀하는 농촌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①예(☞ 22번으로)

②아니오(☞ 곧장 23번으로)

22. 농촌을 떠나고 싶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소득이 낮아서

②생활환경이 낙후되어서

③자녀 교육문제

④전망이 없어서

⑤농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⑥기타(_____)

23. 본인이나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 2순위 : (____)

①친척

②이웃/친구

③행정기관

④민간사회단체

⑤종교기관

⑥사회복지기관

⑦학교나 교육기관

⑧기타 (_____)

24. 정부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도움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2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 2순위 : (____)

①음식, 피복비 등 생계비 지원

②직업훈련, 기술교육

③일자리 알선

④영농자금 등 생업자금 융자

⑤교육비 지원

⑥의료비 지원

⑦농가부채해결

⑧농촌사회복지시설확충

⑨농촌문화시설확충

⑩기타(_____)

Ⅷ. 가구 일반사항

** 이 태의 가족 상황에 대하여 아래표에 적어 주십시오.

가구원수		총 명			가구형태		아래참조	
연간가구총소득		약 만 원			응답자 가구원 번호			
가구원 번호	1. 가구주와의 관계	2. 연령	3.성별	4. 동거 여부	5. 건강상태	6. 학력	7. 직업	8. 소득액
	1. 가구주 2. 배우자 3. 자녀 4. 부모 5. 조부모 6. 형제 자매 7. 기타	만 ____ 세	1. 남 2. 여	1.동거 2.비동거	1. 건강 2. 질환 3. 신체장애 4. 정신장애 5. 기타질환 (2, 3, 4, 5의 경우, 장애명, 등급·질환명 기입)	1. 무학 2. 한글해독 3. 초등졸 4. 중졸 5. 고졸 6. 전문대졸 7. 대졸이상	구체적으로 기입	
1								
2								
3								
4								
5								
6								
7								
8								
9								
10								
** 가구형태 : 1.일반 2.모자 3.부자 5.소년소녀가장 6.단독 7.기타()								

** 다시 한번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 조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용)

일련 번호	지역

안녕하십니까?

농림부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농촌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적 견해를 통해 규범적 욕구와 아울러 정책개발의 기초로 삼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실천해 온 전문적 경험을 토대로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내용을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문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내용이 없는 경우 1가지만 골라 응답해 주시고, 문항마다의 지시에 따라 복수의 응답이나 기입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또한 설문문항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점이 있으면 여백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은 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농촌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작성된 설문지는 동봉한 반송봉투에 넣어 4월 19일까지 반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진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홍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남기철

연락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 : 880-6320)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 생활환경

**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 농업가구의 생활환경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해당상황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지역 농가 식수원 시설은 대체로 어느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까?

- ①상수도(광역/지방) ②간이상수도(마을단위) ③대형암반관정(마을공동)
④우물 및 자가관정 ⑤기타(_____)

2. 귀 지역 농가 식수와 관련되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별 문제가 없다 ②수량이 부족한 상태 ③수질이 위생상 불량한 상태
④식수공급관련 비용부담 ⑤기타(_____)

3. 귀 지역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 및 취사용 연료 사용과 관련되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별 문제가 없다 ②비용 부담 ③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④안전성
⑤기타(_____)

4. 정부의 농가주택정비 용자 등 지원사업이 실제 농촌 주택개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약간 도움이 된다 ⑤매우 도움이 된다

5. 정부의 농가주택개량 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①용자금액이 부족하다 ②용자금 집행이 늦다 ③절차가 번거롭다
④이자부담이 크다 ⑤기타(_____)

6. 귀 지역의 농촌가구 중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는 주택개량을 위한 정부지원의 용자제도를 다른 계층의 농가에 비해 얼마나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 ①다른 계층보다 적게 활용 ②비슷하다 ③다른 계층보다 많이 활용한다

7. 귀 지역 농촌의 환경오염실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II. 보건 의료

1. 귀 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입니까?
 ①대상지역이다(☞ 2번으로) ②대상지역이 아니다(☞ 곧장 4번으로)

2. 의약분업 이전과 비교하여 농민들이 의료시설을 활용하기가 어떻습니까?
 ①훨씬 불편해졌다 ②약간 불편해졌다 ③비슷하다
 ④약간 편해졌다 ⑤매우 편해졌다

3. 의약분업 이전과 비교하여 농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어떻습니까?
 ①훨씬 늘어났다 ②약간 늘어났다 ③비슷하다
 ④약간 줄어들었다 ⑤매우 줄어들었다

4. 귀 지역 농민의 보건의료실태에 비추어 볼 때, 개선해야 할 정책적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다음 보건의료서비스 각 항목의 필요성과 충분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서비스 구분	필요성	충분성
종합병원진료		
병의원진료		
보건소/지소/진료소		
약국		
한방진료		
물리치료		
치과진료		
방문보건사업		
예방업무		
* 필요성 : ①전혀 불필요 ②별로 불필요 ③보통 ④약간 필요 ⑤매우 필요 * 충분성 : ①매우 불충분 ②약간 불충분 ③보통 ④충분한 편 ⑤매우 충분		

5. 귀 지역 농민의 보건의료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다음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우선 순위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2. 농민들이 도시지역 거주자와 비교할 때 의료수요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도시지역 주민이 의료수요가 훨씬 많다
- ②도시지역 주민이 의료수요가 약간 많다
- ③비슷하다
- ④농민들이 의료수요가 약간 많다
- ⑤농민들이 의료수요가 훨씬 많다
- ⑥잘 모르겠다

13. 농촌지역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별로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 2순위 : (____)

- ①방문보건사업 강화
- ②농촌지역에 일반병원 확충
- ③보건소/지소/진료소 확충
- ④응급진료체계정비
- ⑤물리치료강화
- ⑥한방진료강화
- ⑦의료비 지원
- ⑧야간진료체계정비
- ⑨보건소에 의료인력 확충
- ⑩기타()

14. 공식적인 보건의료시설 외에 귀 지역의 농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독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보건의료관련 자원이 있습니까?

- ①있다(내용 :)
- ②없다

15. 위 문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귀 지역 농민들의 보건의료실태에 관해 제언하실 것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12. 신청을 했는데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이유가 가장 많이 해당되는지 주요한 것부터 1, 2, 3 순서로 표시해 주십시오
- ①소득기준() ②재산기준() ③부양자 기준()
 ④기타():(내용 : _____)
13. 귀하의 판단에 현재 농촌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부적절 ②약간 부적절 ③보통 ④적절한 편 ⑤매우 적절
14. 귀 지역에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 사업장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15. 귀 지역 주민 중에 자활공동체 사업장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16. 귀하의 판단에 농촌지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수급자격에서 토지가격산정의 문제 ②수급자격에서 부양자 기준의 문제
 ③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④농촌지역에 대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프로그램의 확충
 ⑤기타()
17. 공식적인 생활보장체계 외에 귀 지역의 농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독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보장의 자원이나 관행이 있습니까?
- ①있다(내용 : _____) ②없다
18. 위 문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귀 지역 농민들의 기초소득보장을 위한 제언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V. 사회복지서비스 및 기타

1. 귀 지역 농민들의 복지상태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필요성과 충분성에 대해 V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필요성	충분성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어린이집)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가족상담		
자원봉사 관리조정 서비스		
기타()		

* 필요성 : ①전혀 불필요 ②별로 불필요 ③보통 ④약간 필요 ⑤매우 필요
 * 충분성 : ①매우 불충분 ②약간 불충분 ③보통 ④충분한 편 ⑤매우 충분

2. 귀 지역의 농민들이 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아동이 없거나 보육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②가족이 돌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다 ④비용부담
 ⑤기타()

3. 귀 지역 농촌의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이들에게 다음 중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도 ②비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③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 정비 ④비행청소년에 대한 계도활동 강화
 ⑤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문화공간의 확대 ⑥기타()

4. 귀하가 근무하는 읍·면·동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농민들의 이용도는 어떠합니까?

- ①이용도가 매우 낮다 ②이용도가 낮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이용도가 높은 편이다 ⑤이용도가 매우 높다

5. 귀 지역 농민들이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이용할만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서비스가 없다
②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③거리가 멀다
④시간이 맞지 않는다 ⑤비용부담
⑥기타(_____)

6. 귀하가 근무하는 읍·면·동 지역 내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_____ 개소)

7. 귀하가 근무하는 읍·면·동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_____ 명)

8. 지난 1년 간 정부(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동 미술전시, 이동 영화관, 이동 도서관, 순회 음악회 등)을 귀 지역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①예(내용 : _____) ②아니오

9. 지난 5년 간 귀 지역 농촌과 관련된 향토/민속문화 계승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마을의 전통민속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②별 변화가 없다
③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전통민속문화가 부활하고 있다 ④잘 모르겠다

10. 정부에서는 농촌지역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역별 향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귀 지역 농민

들의 문화생활 수준향상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습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⑥잘 모르겠다

11. 귀 지역 농민들의 문화생활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다음 문화공간의 필요성과 충분성에 대해 V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필요성	충분성
공공도서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영화관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군·구민회관/복지회관		
기타()		
* 필요성: ①전혀 불필요 ②별로 불필요 ③보통 ④약간 필요 ⑤매우 필요		
* 충분성: ①매우 불충분 ②약간 불충분 ③보통 ④충분한 편 ⑤매우 충분		

12. 귀 지역 농민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문화시설이 없다 ②거리가 멀다 ③여가시간이 없다
 ④홍보부족으로 인해 문화시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⑤비용부담
 ⑥기타()

13. 귀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개발할만한 가치가 있는 독특한 문화자원이 있습니까?

- ①있다(내용 :) ②없다

14.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읍·면 지역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은 평균 58.4%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귀 지역 농촌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은 이 평균 수치에 비해 어떨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 ①훨씬 더 낮다 ②약간 더 낮다 ③비슷하다 ④약간 더 높다 ⑤훨씬 더 높다
 ⑥잘 모르겠다

15. 귀 지역의 농촌마을에 전화모뎀이 아닌 인터넷 초고속통신망(ADSL, CA-TV, 위성통신 등)이 보급되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잘 모르겠다
16. 귀 지역 농민들은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인터넷 등 정보화 체계에 얼마나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다 ②별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 ③그저그렇다
 ④약간 의존하고 있다 ⑤매우 의존하고 있다 ⑥잘 모르겠다
17. 현재 정부 부처 및 여러 공공기관 등에서 농촌 정보화를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귀 지역 농민의 정보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농민들의 정보화 체계 접근에 매우 기여하고 있다
 ②일부 젊은 영농인들에게 기여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
 ③학생층의 인터넷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영농과 관련되어서는 거의 기여가 없다
 ④전혀 농민들의 정보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8. 귀 지역의 농민들의 정보화 체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PC보급을 위한 자금지원 ②인터넷 초고속 통신망 보급
 ③난립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의 체계적 시행
 ④면단위 지역 가정방문 정보화 교육 ⑤영농관련 정보화 체계의 적극 홍보
 ⑥잘 모르겠다
19. 귀 지역 농촌에서 젊은 층의 이농 현상 실태는 어떻습니까?
 ①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젊은 층의 이농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심하지 않다
 ③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④기타() ⑤잘 모르겠다

